정기종합감사

감 사 보 고 서

- 보건환경연구원, 순천의료원, 녹색에너지연구원 -

2022. 11.

전라남도
JeollaNamdo

(감사관실)

Ⅰ. 감사실시 개요

○ 감사기간 : 2022. 7. 11. ~ 7. 15.

○ 감사인원 : 12명

○ 감사범위 :

- 보건환경연구원 : 2019. 11월 ~ 2021. 12월
- 순천의료원, 녹색에너지연구원 : 2019. 1월 ~ 2021. 12월

Ⅱ. 감사결과

(단위 : 건/ 백만원)

대상 기관	총계 (가:라)	신분상 처분			행정상 처분											모범 사례 (다)	사전 컨설팅 (라)
		합계 (가)	징계	훈계	합계 (나 =A:E)	시 정						주의 (B)	개선 (C)	통보 (D)	기관 경고 (E)		
						계 (A =a+b)	재정상 처분(백만원)					재정상 처분외 시정 (b)					
							소계 (a)	회수	추징	감액	기타						
합계	**50**	**8 (11명)**	**1 (1명)**	**7 (10명)**	**39**	**12 (58)**	**5 (58)**	**5 (58)**	**(-)**	**(-)**	**(-)**	**7**	**17**	**1**	**7**	**2**	**3**	
보건 환경 연구원	13	1 (1명)	- (-)	1 (1명)	11	4 (9.9)	2 (9.9)	2 (9.9)	- (-)	- (-)	- (-)	2	4	-	3	-	1	-
순천 의료원	21	4 (6명)	1 (1명)	3 (5명)	16	3 (30)	1 (30)	1 (30)	- (-)	- (-)	- (-)	2	7	1	3	2	1	-
녹색 에너지 연구원	16	3 (4명)	- (-)	3 (4명)	12	5 (18.1)	5 (18.1)	2 (18.1)	- (-)	- (-)	- (-)	3	6	-	1	-	1	-

Ⅲ. 주요 처분요구

1 보건환경연구원

1 용역 검수 업무처리 부적정

□ 보건환경연구원(미생물과 등 2개과)은 '20년부터 '21년까지 **27건, 5억 85백만원**의 **용역**에 대한 **검수** 업무를 처리

○ 「지방계약법」 제17조 등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끝내면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계약서·설계서** 등에 따라 **검수**하도록 규정

○ 또한 「계약집행기준」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착수하고, **착수** 시 발주기관에 **인력·장비투입계획서** 등을 제출하며, **변경** 시 **변경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위반·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연구원(미생물과 등 2개과)은 '20년부터 '21년까지 '실시간○○○분석기 유지보수' 등 **4건**을 검수하면서 **'㈜ㅇㅇㅇ'** 등 2개사가 아닌 **'○○○○○'** **등**이 **용역**을 **수행**했는데도 **부적정 검수**

  * **(미생물과)** 실시간○○○분석기 유지보수(㈜ㅇㅇㅇ, 7백만원)
  (감염병조사1과) 실시간○○○분석기수리 및 교정(㈜ㅇㅇㅇ, 8백만원), 실시간○○○분석기 교정(㈜ㅇㅇㅇ, 6백만원), 생물안전○○○ 검증(ㅇㅇㅇ, 5백만원)

- 또한 '21. 4월부터 '21. '12월까지 **9회**에 걸쳐 **'생물안전○○○연구시설 유지보수용역**(32백만원)' **참여기술자**가 착수 시 제출된 인력이 아닌 **다른 인력**이 **유지보수**를 했는데도, **시정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부적정 검수**

- 그로 인하여 착수신고서와 **다른 인력**이 **투입**되어 용역이 수행되어 계약**행정**의 **신뢰도**가 **확보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앞으로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서, 인력·장비투입계획서** 등 착수 시 제출된 **자료** 등에 따라 용역검수 업무가 **철저히 추진**되도록 **"주의 요구"** 조치

2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 보건환경연구원(환경조사과 등 8개과)은 '19년부터 '21년까지 매년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체결하여 중금속분석실 등 **실험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을 위하여 소관 **연구실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 또한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9조 등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결과 그 **결함사항**에 대해 **보수·보강** 등 조치를 **3개월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연구원(환경조사과 등 5개과)은 '19년부터 '21년까지 정밀안전진단 **16건**의 **결함사항**에 대한 **조치**를 3개월 이내 **미착수** 및 **완료 미이행**

  * ('19) 중금속금속실 ○○○○○장치 ○○풍속 미흡 등 6건, ('20) 수질자동분석기실 ○○○풍속 미흡 등 6건, ('21) 크린룸 ○○○○○장치 ○○풍속 미흡 등 4건

- 그 결과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 등을 사용하는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 초래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는 **지체없이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연구원(감염병조사1과 등 4개과)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2건**을 각각 **244일**과 **273일**을 **도과**하여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표했고, **3건**에 대해 '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공표**를 **누락**

  * (본원) '20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273일 도과, '21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244일 도과
  (동부지원) '19년부터 '21년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공표 누락

- 그로 인하여 **연구종사자**들의 **안전환경 조성** 및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를 초래

☞ 정밀안전실시 결과의 **결함사항**에 대해 **보수·보강 완료 및** 정밀안전실시 결과를 **공표**하도록 **"시정요구"** 조치

☞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요구"** 조치

3 공가사용 및 연가보상비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 보건환경연구원은 '19년부터 '21년까지 소속 **직원**이 **국가건강검진** 및 **특수건강진단**을 사유로 공가를 신청할 경우 **유급 공가**를 허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등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가사용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

- 그런데 연구원(대기보전과 등 2개과)은 ○○○○장 ○○○ 등 **3명**이 검강검진을 사유로 **금요일** 등에 **공가를 신청**하고 **공휴일에 건강검진**을 받는 등 부적정하게 공가를 사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건강검진** 횟수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실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연구원(운영지원과 등 2개과)은 ○○○ 등 2명이 사무직으로 **2년마다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도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 공가를 부적정 사용

- 그로 인하여 **근무기강**이 **무너지고** 총 5명에게 92만원의 연가보상비가 부당 지급되는 결과 초래

< 공가 부당 사용 및 연가보상비 부당 수령 내용 >

(단위 : 원)

연번	직위(직급)	성 명	공가일	실제 건강 검진일	연가보상비 부당 수령액	비 고
합계		5명			928,580	
1	○○○○장 (지방○○연구관)	○○○	'20.07.10.(금)	-	176,580	공가사용 위반
			'21.06.23.(수)	'21.06.19.(토)	184,370	〃
2	지방○○연구사	○○○	'21.07.09.(금)	-	37,420	〃 (4시간)
3	○장 (지방○○연구관)	○○○	'20.06.15.(월)	'20.06.13.(토)	123,550	〃
4	○장 (지방○○연구관)	○○○	'20.06.24.(수)	'20.06.24.(수)	204,180	공가사용 위반 (2년마다 1회 강검진대상)
5	○○○○○장 (지방○○연구관)	○○○	'21.08.09.(월)	'21.08.09.(월)	202,480	〃

☞ **2회 허위 공가사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1명에 대해 **"훈계요구"** 조치
☞ **부적정**하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92만원은 반납하도록 **"시정요구"** 조치

④ 지정 및 의료폐기물 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 보건환경연구원(미생물과 등 13개과)은 '19년부터 '22. 6. 10. 감사일 현재까지 실험실에서 시험·검사 후 배출되는 **지정** 및 **의료폐기물**을 자체 보관시설에 **별도 보관 후 위탁**처리 중

1. 지정폐기물 보관·관리 부적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지정폐기물 1년간 배출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유기용제 등은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1년 내**에서만 보관하도록 규정

○ 또한 지정폐기물 **보관장소**에는 **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용량**,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적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보관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표지판에 **표기**하도록 규정

- 그런데 연구원(미생물과 등 13개과)은 지정폐기물의 **보관기간이 최대 1년**으로 **1년 이내에 배출**해야 하는데도, 짧게는 **93일** 길게는 **195일을 도과**하여 배출하고 있어 **보관기간**을 **미준수**한 채 부적정 관리

- 또한 **본원**(식품분석과 등 6개과)은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 그리고 **동부지원**(대기보전과 등 4개과)은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부서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 그로 인하여 **폐산, 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이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아 **누출** 등 사고발생시 **인체 및 생태계에 위해**를 끼칠 우려 초래

2. 의료폐기물 보관·관리 부적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에 **의료폐기물**은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소독약품 및 장비**를 비치하며 주 1회 **약물소독**하고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 설치**, **보관기간은 15일**까지로 규정

- 그런데 연구원(미생물과 등 2개과)은 의료폐기물을 전용 보관창고가 아닌 지정·일반폐기물과 같은 공간에서 보관하고 있고, 보관기간 15일을 준수하지 않고 **짧게는 28일**부터 **길게는 52일**까지 **기간**을 **도과**하는 등 **부적정** 처리

- 또한 **동부지원**(감염병조사2과)은 **의료폐기물을**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가 아닌 상부가 개방된 **불법건축물**(창고)**에 보관**하는 등 **부적정 관리**

< 의료폐기물 보관 부적정 내용 >

위치	위반사항
본원(남악)	□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을 같은 공간에 보관(48㎡) □ 부식이 우려되는 금속자재로 설치 □ 청결불량(농업용 비료, 먼지 등 방치되어 청결 불량 □ 소독약품 및 장비 없음, 주1회 약물소독하지 않음 □ 관리책임자 변경 안됨 (현 관리자 ○○○ 2020. 6. 13. 변경) □ 보관기간 도과된채 보관 중(52일, 28일)
동부지원 (순천)	□ 상부가 개방된 불법 건축물(2.8㎡)에 보관 □ 목재 파렛트, 흙, 먼지 등 방치되어 청결 불량 □ 소독약품 및 장비 없음, 주1회 약물소독하지 않음 □ 표지판 설치 안됨

- 그 결과 의료폐기물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아 **누출 등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와 **책임자 규명** 등이 **곤란**해질 우려

3. 불법건축물 관리 부적정

○ 「건축법」 제11조 등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 그런데 연구원(운영지원과)은 '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보관창고' **1개소**를 **증축**(○.○㎡)하면서 **허가없이 건축**하여 **부적정**하게 **처리**

- 그로 인하여 **지정** 및 **의료폐기물**의 **누출 등 사고발생 우려**와 **173만원의 예산**이 **불법건축물**에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결과 초래**

☞ **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의 **보관** 및 **관리**를 **적법**하게 하도록 **"시정요구"** 조치

☞ **불법건축물** 부지의 용도, 건폐율 등을 고려하여 **양성화** 또는 **철거방안**을 **검토**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조치

5 위험근무수당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 보건환경연구원은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구분표** 및 **등급별 구분표**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

○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위험근무수당**은 방역·보건·수의 등 9개 부문에 **상시 종사**함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규정

* ①직무의 위험성(방역·보건·수의 등 9개 부문), ②상시 종사여부(일시적·간헐적 종사자 지급대상 아님), ③직접종사(위험 업무를 직접 수행), 지급액 : 월 4만 ~ 5만원

○ 그리고 道 **회계과**는 **위험근무수당 신청 기준 준수**(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 '20. 7. 8.)에 따라 **직무의 위험성, 상시 종사 여부,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수당**을 **신청**하도록 통보

- 그런데 연구원(미생물과 등 11개 부서)은 '19. 12월부터 '22. 6월까지 **과장급 11명**이 **직무의 상시·직접 종사 여부** 등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위험근무수당을 신청하여 **903만원**을 **지급**받음

직위	성명	업무분장	지급기준 해당여부			부적정 지급액 (원)
			직무 위험성	상시 종사여부	직접 종사여부	
부장,과장	○○○ 등 11명	검사업무 및 검사능력 전반 조사·시책·연구사업 관한 사항	○	×	×	9,030,920

- 그로 인하여 **위험성 직무**에 **상시·직접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 903만원**이 잘못 지급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 부적정하게 지급된 위험근무수당 903만원은 반납하도록 **"시정요구"** 조치

☞ 앞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험성 직무에 상시·직접 종사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적법하게 신청하고 지급받는 등 위험근무수당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⑥ 공사 · 물품 하자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 보건환경연구원은 '19. 12월부터 '21. 12월까지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동부지원 건립 소방공사' 등 **19건의 공사**와 '미생물 동정 질량분석기' 등 **42종의 물품**을 **관리**

○ 「계약집행기준」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물품 등에 대해 **하자담보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를 하고**, 공사는 하자담보 **존속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따로 최종검사**를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연구원(운영지원과)은 '19. 12월부터 '21. 12월까지 **동부지원 건립 소방공사 등 4건**에 대하여 총 **4회 하자검사 미실시**(정기검사 3회, 최종검사 1회) **하여** 관련 업무를 소홀

- 또한 미생물과 등 11개 부서는 '19. 12월부터 '21. 12월까지 **총 42종**의 물품을 검수한 이후 '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 앞으로 관련부서에 공사와 물품에 대한 하자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⑦ 시험의뢰 및 검사 수수료 산정 업무처리 부적정

□ 보건환경연구원은 '19. 12월부터 '21. 12월까지 시험의뢰인이 먹는물검사, 토양폐기물검사 등을 신청 시 **소속직원의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를 포함한 수수료**를 **납부**받아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

○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지자체는 **사용료·수수료**를 **부과·징수**할 경우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

○ 또한 「전라남도 시험의뢰 및 검사 조례」 제4조 등에 시험의뢰자는 **관계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시료**를 **채취**할 경우 「전라남도 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른 **여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사전 납부**하도록 규정

○ 한편 연구원은 **먹는물·지하수검사**에 시료 채취시 **여비**는 **관용차량**을 이용한 **여비**를 산정하고 있는 반면, **토양폐기물검사** 시료 채취시에는 **자가용차량**을 이용한 **여비**를 산정하여 시험의뢰인에게 수수료를 받고 있음

- 그런데 연구원(수질분석과, 토양폐기물과)은 먹는물·지하수검사와 토양폐기물검사 시 **여비 산정기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여 적게는 **2만원**부터 많게는 **10만원**까지 시험의뢰인에게 **다르게 징수**하고 있음

시군	수수료에 포함하여 납부받는 여비(원)			시군	수수료에 포함하여 납부받는 여비(원)		
	토양폐기물(A)	먹는물·지하수(B)	차액(A-B)		토양폐기물(A)	먹는물·지하수(B)	차액(A-B)
목포	40,000	20,000	**20,000**	장흥	114,000	60,000	54,000
여수	136,400	60,000	76,400	강진	104,800	60,000	44,800
순천	118,400	60,000	58,400	해남	108,400	60,000	48,400
나주	109,200	60,000	49,200	영암	100,000	60,000	40,000
광양	126,800	60,000	66,800	무안	40,000	20,000	20,000
담양	116,800	60,000	56,800	함평	100,000	60,000	40,000
곡성	126,000	60,000	66,000	영광	111,600	60,000	51,600
구례	141,600	60,000	81,600	장성	114,800	60,000	54,800
고흥	161,600	60,000	101,600	완도	132,800	60,000	72,800
보성	125,600	60,000	65,600	진도	108,400	60,000	48,400
화순	115,200	60,000	55,200	신안	86,000+도선비	60,000	26,000+도선비

- 그로 인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하는 도민들에게 **공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수료가 **부과**되어 행정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결과 초래

☞ 시험의뢰인에게 관계 공무원의 출장이 필요한 시험검사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경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여비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등 시험을 의뢰하는 도민에게 지역 및 검사분야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공평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조치

8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 보건환경연구원(토양폐기물과)은 도내 16개 시군 41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여부 조사를 위해 매년 **농약 잔류량**을 **검사**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 등에 골프장에서 **채취한 시료**는 **즉시 실험**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 4℃에서 **최대 7일**(**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추출 후 **최대 40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

○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은 '20. 1. 13.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시 골프장에서 검사 **시료**를 채취하여 **전처리**를 거쳐 **보관**하는 경우 **40일 이내**에 **분석실험**을 **완료**하도록 **"주의요구"** 처분 받음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 등에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

- 그런데 연구원(토양폐기물과)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인 '20. 1월부터 '21. 6월까지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40일 내에 처리하지 않고 짧게**는 **2일 길게**는 **48일**까지 **지연**하여 부적정하게 처리

연도	검사시기	검사대상	시료 채취 후 분석 실험 실시 현황		
			40일 이내	40일 이후	경과일
계	4회	162개소	58개소	104개소	
'20	1월~6월	16개 시군 41개소	2개소	39개소	4~48
	7월~12월	16개 시군 41개소	4개소	37개소	2~33
'21	1월~6월	16개 시군 40개소	21개소	19개소	2~6
	7월~12월	16개 시군 40개소	40개소	0개소	0

- 그로 인하여 **검사**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하게** 되었고 2019년 정기종합감사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되풀이** 되는 결과 초래

☞ '21. 7월 이후 40일의 기간을 준수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시정 완료하였으나, 향후 유사한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해 **"통보(시정완료)"** 조치

2 순천의료원

1 직원 신규채용 및 임원 공개모집 업무처리 부적정

□ 순천의료원(총무과)은 '19년부터 '21년까지 47회, 127**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하고, **임원(이사)** 8명을 **3년**마다 **공개모집** 추진

1.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평가기준 미공개

○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이하 "출자기관 인사지침")에 기관장은 채용시험 시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을 **공고**하도록 규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 기준

- 그런데 의료원(총무과)은 '19년부터 '21년까지 채용공고문에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공고함

2. 서류전형 업무처리 부적정

○ 「출자기관 인사지침」에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며,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을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의료원(총무과)은 서류전형 시 **적격** 또는 **부적격**만을 판단하여야 되는데도 자체 인사규정이나 채용공고에도 없는 채점표를 **자의적**으로 **추가**하여 부당하게 평정

3. 임원 공개모집 업무처리 부적정

○ 「의료원 정관」에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

○ 「출자기관 인사지침」에 임원의 연임기준은 직위별 **직무수행 실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임원 채용과정을 **공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의료원(총무과)은 '22. 5. 26. 이사 임명승인을 추진하면서 연임 이사 3명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 평가**를 **미실시**하고, 신규 또는 연임 이사에 대한 채용과정 등을 홈페이지 등에 **미공개**

○ 그로 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임직원 채용업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 초래

☞ 앞으로 직원 신규 채용 시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규정에 따라 평가항목과 방법을 적용하며, 이사 연임 시 실적평가를 실시하는 등 채용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2 개원 100주년 기념관 등 자산관리 부적정

□ 순천의료원(총무과)은 「의료원 회계규정」 등에 따라 자산을 재고·고정·부외자산으로 구분, 매년 6월말 현재 자산상태를 파악하여 관리

1. 불법건축물 방치로 인한 이행강제금 납부

○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횟수만큼 연장하도록 규정

- 그런데 의료원(총무과)은 '15. 6. 7. 가설건축물(창고용, 00.0㎡)를 축조한 뒤 ○○시에 **사용연장**을 **미신고**하여 '19. 7. 25. ○○시에 **이행강제금 1,930만원을 납부**하는 등 업무처리 부적정

2. 건축물 등기 및 목적물의 방치

○ 「의료원 회계규정」 제124조에 고정자산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자산관리 담당은 **소유권**, 권리에 대하여 **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의료원(총무과)은 기념관을 '19. 10. 22.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는데도 '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소유권보존 미등기**로 자산관리 소홀

- 또한 '19. 10. 10. 1억 925만원을 투입하여 신축하고 '19. 10. 14. 100주년 기념행사를 한 후부터 '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외부인에게 공개하거나 전시하지 않는 등 건립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

○ 그로 인하여 예산을 지출하여 구축한 목적물을 취득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저해**

3. 부외자산 등 관리 소홀

○ 「의료원 회계규정」 제110조 등에 부외자산은 증여 등을 통하여 사용 또는 점유하는 자산이며, **자산관리담당**은 매년 **6월말 현재** 자산상태를 파악하여 8월 말까지 원장에게 보고 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규정 제129조에 부외자산을 자산에 등재하는 때 **등재가액**은 **취득가액** 또는 **평가액**으로 하며,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해서는 적절한 평가를 하여 자산으로 등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의료원(총무과)은 매년 6월말 현재 자산에 대한 **변동상황**을 파악하지 않았고, '16. 2월 기증받은 부외재산인 ○○○ ○○○○용 전동펌프 등 **9건**의 **자산**에 대하여 **자산**으로 등재하지 않은 채 방치

○ 그로 인하여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소홀히 하여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분하지 못할 우려 초래

☞ 100주년 기념관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9건 부외자산에 대하여 자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하도록 **"시정요구"** 조치

☞ 앞으로 불법건축물 방치로 인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유권 등기를 미이행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요구"** 조치

☞ 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現ㅇㅇㅇ에게 **"훈계요구"** 조치

3 진료용 ○○○ 연장계약 등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순천의료원(총무과)은 「의료원 회계규정」 제166조에 따라 「지방계약법」 등을 준용하고, ‘19. 1월부터 ’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용역 5건, 물품 14건에 대하여 연장계약을 추진

1. 연장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7조 등에 규정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 또한 「계약집행기준」 제14장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안에 **불가항력**의 사유 등에 한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의료원(총무과)은 ‘17. 5월부터 ’18. 4월까지 ○○용역 등 **5건**의 **용역계약**을 한 후 ‘19. 12월까지 **계약상대자**와 적게는 2차례 많게는 3차례에 걸쳐 총 **11차례 연장계약***을 추진하여 2,493백만원을 지출

  * (연장계약 사유) 용역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 또한 **진료용 ○○○ 공급**의 경우 **’17년에 12건을 계약**한 후 ’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계약상대자와 적게는 1차례, 많게는 5차례에 걸쳐 **매년 연장계약**을 했고, **‘19년과 ’20년**에 **2건을 계약**한 후 **매년 연장계약**을 하는 등 총 **52차례 연장계약**을 추진하여 8,845백만원을 지출

- 그로 인하여 경쟁원리가 무시된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업체**에 **계속 특혜**를 **제공**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는 결과 초래

○ 「계약집행기준」 제2장에 계약담당자는 입찰·계약 체결 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고,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용역·물품의 **예정가격 작성없이 계약금액**(113억 3,800만원)**을 임의산정**하였고, **낙찰률 미적용**으로 약 13억 61백만원*의 예산 낭비

  * 11,338백만원-〔11,338백만원(용역 2,493백만원+ 물품 8,845백만원) * 88%〕

2. 계약과정의 공개 부적정

○ 「지방계약법」 제43조 등에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 등 계약이행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하도록 규정

- 그런데 의료원(총무과)은 계약이행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이 아닌 '20년까지는 **수기** 작성, '21년은 **엑셀**로 간략히 작성하여 **담당자 PC**에 관리하고 있고, 계약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공개**하여 부적정 처리

○ 그로 인하여 계약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 사무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

☞ 관행적으로 연장계약을 추진하고, 임의로 계약금액을 산정하여 예산을 낭비하며, 계약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의료원에 **"기관경고"** 조치

☞ 위 관련자인 現ㅇㅇㅇ, 現ㅇㅇ에게 **"훈계요구"** 및 現ㅇㅇ에게 **"징계요구"** 조치

4 재정(신원)보증보험료 납부 업무처리 부적정

□ 순천의료원(총무과)은 「의료원 인사규정」, 「의료원 회계규정」에 따라 **회계관계직**을 지정하여 계약 및 지출·수입 등 회계업무를 처리

○ 「의료원 인사규정」 제25조에 **신규임용 직원**은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규정 제77조에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그리고 「의료원 회계규정」 제8조에 의료원의 회계관직으로 **원무과장**을 수입담당으로, **원장**을 징수결정·지출·자산관리담당·계약담당으로, **총무과장**을 자산출납당당·분임지출담당으로 지정한다고 규정

- 그런데 의료원(총무과)은 신규임용 또는 회계관계 직원이 아닌데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적게는 208명 많게는 251명에게 매년 재정보증서를 부당 징구

* (재정보증서 징구방법) 보험가입에 소요경비를 급여에서 일괄 공제 방법

- 그로 인하여 불필요한 재정보증서 비용을 소속 직원으로부터 징구하여 '19년부터 '21년까지 **총 373만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하는 결과 초래

☞ 매년 모든 직원들에게 근거없이 징구하고 있는 재정(신원)보증보험 증권을 「의료원 인사규정」 등에 따라 신규임용 직원과 회계관계 직원에게만 징구하도록 **"시정요구"** 조치

5 의료기기 구매 할인 규정 미적용

□ 순천의료원(총무과)은 '20. 6월부터 '22. 6월까지 환자진료용 **다목적수술대** 등 **24종**의 **의료기기 구매**를 위하여 **11억 8,891만원**을 집행

○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별표 2의3] 등에 **의료기기** 등의 거래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비용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의료기기가 도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결재(0.6%), 2개월 이내(1.2%), 1개월 이내(1.8%) 이하의 비용할인

- 그런데 의료원(총무과)은 '20. 6월부터 '22. 6월까지 ○○○○○○ 등 24종 의료기기 구매 시 **입찰공고문**에 **대금결제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계약 체결(11억 8,900만원)하여 **비용 할인**을 **받지 못**하는 등 업무 소홀

구입내역	계약금액(천원)	납품완료 후 대금 결제일	할인율 (%)	할인율 적용 시 예산절감액 (천원)
24종	**1,188,915**			**20,838**
○○○○○ 등 21종	1,095,215	1개월 이내	1.8	19,714
○○○○○ 등 3종	93,700	2개월 이내	1.2	1,124

- 그 결과 의료기기 구매대금 11억 8,891만원을 **2개월 이내**에 **결제**하고도 **2,083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할인**받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앞으로 의료기기 등을 구매할 경우 입찰공고문에 대금결제 조건을 명시하여 비용 할인을 적용받도록 **"주의요구"** 조치

6 입원 및 외래환자 진료비 미수금 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 순천의료원(원무과)은 '17. 1월부터 '22. 6월까지 의료행위로 발생한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발생**에 따른 **결손처리** 등 진료비 관리업무 수행

○ 「순천의료원 회계규정」 제90조 등에 **진료비 미납 시 독촉장**을 **발행**하고, **체납자 재산상황**을 **조사**하며, **체납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소액 및 납입 가망이 없는 **진료비 미수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결손처리**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의료원(원무과)은 '17. 1월부터 '22. 6월까지 발생된 181건의 미수금 중 98건(55%)은 **독촉장**을 **미발행**하고, **단 한 차례도** 체납자 재산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3년이 경과한 미수금에 대한 **결손처리** 미이행

(단위 : 건,천원)

연도	진료비미수금현황		독촉장발행건수		재산상황 등 조사여부	소멸시효 경과 미수금 결손처리 현황		
	건수	미수금	발행	미발행		대상건수	결손처리여부	결손처리가능액
계	181	31,610	83	98		83		19,931
'17년	60	10,703	31	29	×	60	×	10,703
'18년	46	7,026	18	28	×	46	×	7,026
'19년	34	3,785	24	10	×	23	×	2,202
'20년	18	3,548	4	14	×		시기 미도래	시기 미도래
'21년	12	4,396	4	8	×		〃	〃
'22. 6월	11	2,152	2	9	×		〃	〃

- 그로 인하여 진료비 미수금에 대하여 적시에 독촉장을 발행하지 않고 체납자 재산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의료원의 재정적 손실 초래

☞ 소멸시효가 완성된 소액 및 납입 가망이 없는 진료비 미수금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 등을 통하여 결손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조치

☞ 앞으로 진료비 미수금에 대한 독촉장 발행, 체납자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⑦ 임직원 보수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 순천의료원(총무과)은 ’19. 1월부터 ’22. 6월까지 「순천의료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의료원 임직원에 **보수·수당** 지급업무 수행

1. 위험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순천의료원 보수규정」 제28조 〔별표 7〕 수당 등 지급기준표 13. 위험수당은 지급기준을 갑종 6만원* 을종 5만원**으로 규정

* (갑종) 의료·감염·방역·보건부문(의사,약사,간호사,보건직 종사자)

** (을종) 기타부문(사무직, 기술직, 기능직 종사자)

○ 또한 같은 규정 제40조에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

○ 한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위험근무수당**은 **위험한 직무**에 **상시·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 그런데 의료원(총무과)은 위험수당 지급기준이 의사, 간호사 등 모든 직종으로 되어 있다는 사유로 ’19. 1월부터 ’22. 6월까지 위험한 직무에 상시·직접 종사하지 않은 49**명*****에게 위험수당 **7,806만원**을 부당 지급

*** (49명) 계약·지출·장례지도·전산업무 등 임직원

2. 의사직 등 연봉제 임직원 명절휴가비 지급 부적정

○ 「순천의료원 연봉제규정」 제3조에 **연봉**이란 기본연봉, 성과상여금,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이고, **부가급여**는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벽지수당 등으로 규정

- 그런데 의료원(총무과)은 ’10년에 **의사직**과 연봉협상 과정에서 **연봉인상 요구**가 있자 **연봉**에 **명절휴가비**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10. 9. 5. 원장 결재를 받아 ’10. 6월부터 ’22. 6월까지 **총 156명**에 **2억 7,213만원**을 **중복 지원**

- 그로 인하여 연봉에 포함된 **명절휴가비 2억 7,213만원**이 부당하게 중복 지급되어 의료원의 재정손실을 초래

☞ 위험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험한 직무에 상시·직접 종사하는 자에게만 지급되도록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보수규정」 제28조를 개정하도록 **"제도상 개선요구"** 조치

☞ 앞으로 의사직 등 연봉제 임직원과의 연봉계약 시 연봉에 이미 포함된 명절 휴가비가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요구"** 조치

8 진료성과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 순천의료원(총무과)은 「진료성과평가기준」에 따라 계약직 의사의 진료성과평가를 하여 초과진료성과급을 지급

○ 「진료성과평가기준」 제9조 등에 **진료비 원가산출배분 기준**에 따라 의업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진료성과를 평가하고, **원가산출**은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가 해당된다고 규정

- 그런데 의료원(총무과)은 '19년부터 '22년 5월까지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등**을 **비용**으로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인건비 등을 누락**한 채 **재료비만을 차감**하여 **비용**을 **과소 차감**하여 진료성과평가 업무를 부적정 처리

○ 「진료성과평가기준」 [별표 3] 초과진료성과급 배분기준에 월별 **전진료과**의 수지가 **흑자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진료과의 기본진료성과(수익목표액)를 초과하는 해당액의 10%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

- 그런데 의료원(총무과)은 재정자립도*가 계속 **적자**인데도 '19. 1월부터 '22. 5월까지 초과진료성과급을 부적정 지급

* '19년 90.39%, '20년 71%, '21년 81.73%

○ 그로 인하여 **규정을 미준수**한 채 **진료성과평가**를 하여 의료원의 **건전재정 운영**이 **어렵고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순천의료원 진료성과평가기준」에 따라 원가산출 배분기준에 따라 **수익**에서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를 포함한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초과진료성과급은 월별 **전진료과**의 **흑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기관경고" 조치**

☞ 앞으로 관련 규정에 준수하여 **진료성과**를 **정확히 평가**하여 초과진료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9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임직원 소개 감면 부적정

□ 순천의료원(장례사업팀)은 **건전한 장례 문화**를 정착하고 **사용자 편의**와 **고품질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례식장 설치·운영 중**

○ 「의료원 장례식장운영관리규정」 제9조 등에 **임직원 소개,** 직원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를 **30% 감면**하도록 규정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18. 12. 17.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방안」**을 통해 **부정청탁 악용 소지**가 있는 **국공립병원**의 **임직원소개·지인감면제**를 '19. 6월까지 **폐지**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 그런데 의료원(장례사업팀)은 장례식장 이용자 유치 등을 이유로 '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 규정을 폐지하지 않은 채 '19. 1월부터 '22. 6월까지 **임직원 소개 감면**이 **518건**으로, 총 감면 942건 중 **55%를 차지**

- 특히, 장례업무와 밀접한 직무관련성 있는 **장례지도사 소개**로 인한 **감면이 232건**(44.8%)를 차지하여 **부정청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데도 자체 규정 정비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음

○ 「의료원 장례식장운영관리규정 세부지침」 제4조 등에 **장례식장 수가책정** 및 **운영활성화** 등은 **장례식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의료원(장례사업팀)은 '19. 1월부터 '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위원회 심의없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지부 등 **5개 단체**와 **장례식장 감면 협약 체결만**으로 **시설사용료 30%를 감면** 중

○ 그 결과 **부정청탁 유발 소지**가 **높은 임직원 소개 감면제도 운영**으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이미지 훼손 우려**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시설사용료 임직원 소개 감면에 대하여 검토하여 자체 규정 등을 정비하여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조치

☞ 앞으로 규정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장례식장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장례식장 수가가 책정되도록 **"주의요구"** 조치

⑩ 순천의료원 관사 관리 부적정

□ 순천의료원(총무과)은 의사 및 일반직원의 **주거안정**과 **근무편의**를 위하여 「의료원 관사관리규정」에 따라 총 **21세대 관사**를 **운영·관리**

1. 의료원 관사 부당 임대

○ 「의료원 정관」 제4조에 의료원은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장례사업** 및 **음식업**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

- 그런데 의료원(총무과)은 **임대사업**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도 **의료원 소유 관사**(석현동 ○○○○아파트)를 '14. 8. 15.부터 '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약 8년** 동안 **일반인**에게 **전세 임대**(6,500만원)하여 **부당 운용**

- 그 결과 해당 관사는 **공공의료기관 역할과 무관**한 일반인에게 **전세 임대**로 운용되고 있으며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2. 관사 전세보증금 지원 및 관리 부적정

○ 「의료원 관사관리규정」에 의사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원**이 **소유**한 **연립주택** 및 **아파트**와 **전세주택**을 '**관사**'로 규정

○ 한편 의료원은 '10년부터 '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본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과 ○○○(의사)에게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지원

- 그런데 의료원(총무과)는 본인이 **임차**하는 거주지의 **전세보증금 지원 근거가 없는데도 부당**하게 **지원**하였고,

- 특히 '12. 11. 23.*부터 '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주택자금 명목**으로 **사용**되었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는 등 **관사관리 업무 태만**

* '12. 11. 23. 해당 거주지를 매입하고 '18. 1. 28. ○○시 소재 아파트(○○○○아파트)를 매입한 후 이사

- 그 결과 특정인에게 **재정상 특혜**를 주고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이미지 훼손** 초래

☞ 의료원 소유 관사를 부당하게 일반인에게 임대하지 않고 해당 관사를 관사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조치

☞ 전세 보증금 관리 업무를 태만히 한 담당자와 전세보증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의사에게 **"훈계요구"** 조치

☞ 관사 전세보증금 지원 근거 없이 부당하게 지원한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조치

3 녹색에너지연구원

1 지식재산권 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 녹색에너지연구원(경영기획실)은 ‘11. 6. 30.부터 ‘22. 7. 15. 감사일 현재 **지식재산권 44건**을 **관리**

1.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 「직무발명보상규정」 제6조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서장** 등 **5~7인**으로 **위촉**하며 **접수된 발명**의 **직무발명 해당 여부·승계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

- 그런데 녹색에너지연구원(경영기획실)은 ‘15. 12. 17.부터 ‘21. 7. 2.까지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9차례 개최**하는 동안 **위원회**를 **미구성**한 채, 위원회 개최 시마다 **내부결재**로 위원들을 구성·운영

- 또한 **3차례**는 **원장**이 **아닌** ○○○○**실장** 등을 **위원장**으로 정하여 **심의**하였고, 직원이 직무발명한 **44건**의 특허·상표 중 **27건**은 **위원회 심의없이** 특허·상표 **출원**하는 등 42건*의 직무발명에 대한 관리 소홀

* 미심의(27건), 특허출원 이후 심의(5건), 심의 없이 연차 등록갱신 등(10건)

○ 그로 인하여 직무발명 업무의 추진 절차를 위배하는 등 지식재산권 운영의 객관성과 신뢰 훼손

2. 임직원 직무발명 미신고 및 권리승계 등 사후 미조치

○ 「직무발명보상규정」 제6조 등에 **직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 신고서 등을 **원장**에게 **제출**하고, **원장**은 **승인**하여 **발명자**에게 **통지**하며, **발명자**는 **양도증서**에 의해 **양도**하여 **연구원 명의**로 **특허** 등을 **출원**하도록 **규정**

○ 또한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0조에 특허권의 양도 등으로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명자**에게 **발생수입**의 **4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 그런데 녹색에너지연구원(경영기획실)은 **직원이 직무발명한 특허·상표 44건**에 대한 신고서 등을 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원장이 직무발명의 **승계 여부**를 승인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또한 '16. 12. 21. 출원한 '산업단지 ○○○○ 그리드 시스템 건의 직무발명' **기술이전료 수입 3,850만원**이 **발생**하여 **발명자**(10인)에게 4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보상금 미지급**

○ 그로 인하여 연구원의 지식관리권 관리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이 저해되고,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하지 못해 연구의욕을 떨어트리는 결과 초래

☞ 지식재산권 관리를 부적정하게 관리한 現 ㅇㅇㅇ에게 **"훈계요구"** 조치

☞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임직원 직무발명 신고 및 권리승계 등을 하도록 **시정요구"** 조치

2 보조금 정산 업무처리 부적정

□ 녹색에너지연구원(경영기획실 등 5개 부서)은 '19. 1월부터 '21. 12월까지 전남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해 **보조사업 159건**(사업비 887억원)을 추진 중

○ 「보조금 관리법」 제27조 등에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한 때 **실적 보고서**를 관리기관(중앙관서의 장, 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정산** 절차를 거쳐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반환**하도록 규정

- 그런데 녹색에너지연구원(경영기획실 등 5개 부서)은 '19. 1월부터 '21. 12월까지 정보통신 ○○○○ 3차사업 등 총 **5건**에 대한 **반환금 8억 628만원**이 **발생**하였는데도 '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미반환**

- 그로 인하여 **보조사업 회계**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여 연구원**의 **신뢰도**가 **훼손**될 **우려**

☞ 보조사업 미반환금 8억 628만원에 대해 관리기관에 조속히 반환 조치 하도록 **"시정요구"** 조치

3 공사감독관 업무추진 부적정

□ 녹색에너지연구원(일자리지원센터 등 8개 부서)은 '19. 1. 1.부터 '21. 12. 31.까지 **20건**의 **공사**를 **추진**

○ 「지방계약법」 제16조 등에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절**하게 **계약**이 **이행**되도록 **기술직원**을 **공사감독관**으로 **임명**하여 **감독**하도록 **규정**

- 그런데 녹색에너지연구원(일자리지원센터 등 8개 부서)은 **12건 공사**에 대하여 기술직원이 아닌 사업부서의 **연구원** 등에게 **감독**하게 하고, **11건 공사**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연구원** 등에게 **준공검사**를 하도록 함

○ 그로 인하여 공사 4건에서 시공내용 변경, 미시공 등으로 설계변경 감액(660만원) 미조치하여 **건설공사 업무추진 신뢰도**를 **훼손**하는 **결과 초래**

☞ 건설공사의 시공내용 변경 및 미시공 등으로 설계변경 감액 미조치 한 사업비 660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조치

☞ 앞으로 건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기술직원 등을 감독자(관)로 위임(선임)하여 적절하게 계약이 이행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기술직원 채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조치

4 일상감사 업무처리 부적정

□ 녹색에너지연구원(감사실 등 6개 부서)은 '19. 1월부터 '21. 12월까지 **물품, 용역 및 공사**에 대하여 총 **359건**의 **일상감사**를 **실시**

1. 일상감사 검토 업무처리 부적정

○ 「자체감사규칙」 제13조 등에 **집행부서**는 **일상감사 대상**에 대해 **원장 결재 전 감사실장**의 **협조**를 받아야 하고, **감사실장**은 **적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

○ 또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 **일상감사부서**에 협상에 의한 계약 **타당성**을 **검토받아 입찰 의뢰**하도록 규정

- 그런데 녹색에너지연구원(감사실)은 '19. 1월부터 '21. 12월까지 총 **359건**의 **일상감사**를 하면서 **단 한 건**의 **의견 제시**도 **없이 협조**하였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된 **16건 용역**은 **계약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처리**

- 그로 인하여 주요 **사업 계약체결**에 따른 **예산절감기회**를 **상실**하였고,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일상감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 초래

2. 일상감사 미실시 및 계약 체결 후 일상감사 실시

○ 「자체감사규칙」 제13조 등에 집행부서는 **일상감사 대상**에 대해 **원장 결재 전 감사실장**의 **협조**를 받아야 하고, **감사실장**은 **적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

- 그런데 녹색에너지연구원(감사실 등 6개 부서)은 '19. 1월부터 '21. 12월까지 **8건**이 **일상감사 시 감사실장**의 **협조**를 **누락**했고, **4건**은 **계약 체결 후 일상감사**를 **실시**하였는데도 **감사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그로 인하여 **일상감사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앞으로 일상감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 일상감사 운영메뉴얼 제작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하도록 **"통보"** 조치

5 간접공사비 등 정산 업무처리 부적정

□ 녹색에너지연구원(상용화사업실 등 3개 부서)은 '19. 1월부터 '21. 12월까지 전남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해 **2천만원 이상 공사 14건**에 대해 약 **56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1. 간접공사비 정산 업무처리 부적정

○ 「계약집행기준」 등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를 받을 때 **보험료** 등 **납부 여부**와 **간접공사비 사용 내용**을 **최종 확인 후 정산**하도록 규정

- 그런데 녹색에너지연구원(상용화사업실 등 3개 부서)은 '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 지역상생 3차 ○○○발전설비 제조·구매설치공사" 등 **4건**이 **정산 자료가 없는 간접공사비*** **88만원**을 **집행**했는데도 **미회수**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2. 공사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사용불가 항목으로 **과다 집행된 금액**을 **감액·반환 요구**하도록 **규정**

- 그런데 녹색에너지연구원(상용화사업실 등 2개 부서)은 사용불가 항목으로 집행된 금액을 **감액·반환** 요구해야 하는데도 '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3개 사업장**에서 **사용불가 항목***으로 **사용**한 **1,064만원**을 **감액·반환 미회수**

* 공사 표지판, 신호수 인건비, 자동심장충격기, 유류대, 식대 등

- 그 결과 안전관리비 **1,064만원**을 **과다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하였고 **대가지급**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연구원의 신뢰도 훼손

☞ 과다 지급한 간접공사비 88만원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64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조치

6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 녹색에너지연구원(기획경영실)은 ’21. 1월부터 ’21. 12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임원 1명, 직원 42명(정규직 16, 비정규직 26)을 채용

1. 임원 자격요건 인사규정 미반영

○ 「출자기관 인사지침」에 **임원**의 **자격**은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학력요건, 자격증 요건, 공무원 경력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관** 또는 **자체 인사규정**에 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녹색에너지연구원(경영기획실)은 ’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원장 공모**를 위한 **자격요건**을 **정관**이나 **내부규정**에 **미반영**
- 또한 ’20. 11. 6. ‘**제○대 원장공모 계획**’에 제○대 연구원장 공모 시 적용했던 **자격요건**을 그대로 **반영**하여 **내부결재**를 받아 공모 진행
- 그로 인하여 원장 공모 자격 요건이 정관요건이 정관이나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고 임의대로 결정되어 **연구원장 공모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 초래

2. 신규직원 채용 시 성범죄 및 병역기피 결격사유 조회 누락

○ 「인사관리 규정」 제12조에 「성폭행범죄 처벌 등에 관련 특례법」 제2조 관련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 **성관련 범죄경력자**, 「병역법」에 따른 **병역기피**한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녹색에너지연구원(경영기획실)은 ’21. 1월부터 ’21. 12월까지 **42명**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성관련 범죄경력, 병역기피자 조회 미실시**
- 그로 인하여 신규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채용되어 **인사업무 신뢰**를 **저해**

3. 경력직 자격요건 사전공개 미실시

○ 「출자기관 인사지침」에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시에는 **채용기준** 또는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사전**에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

- 그런데 녹색에너지연구원(경영기획실)은 ’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경력직 채용 시 구체적 자격기준**을 정하지도 않고 **기관 홈페이지**에도 **미공개**

- 또한 ‘20. 11. 26. ○○○○**분야 경력경쟁시험 채용계획**(1급, 1명)에 채용요건을 ○○○○ **경력 5년**을 필수조건으로 **제한**하면서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개 없이** ‘20. 12. 17.부터 ’20. 12. 28.까지 **신규채용 공고**

- 그 결과 해상풍력분야 경력경쟁시험에 **1명 지원**에 그쳐 **재공고**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춘 **적격자**들의 **응시 기회 축소**

☞ 임원 자격요건을 「재단 인사규정」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임원 공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 조치

☞ 신규채용 시 성범죄 및 병역기피자 결격사유를 조회하여 부적격자가 채용되지 않도록 하고, 경력경쟁시험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사전에 알려 채용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주의요구”** 조치

7 행사홍보비 예산 집행 부적정

□ 녹색에너지연구원(경영기획실)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세입 및 세출예산 과목에 맞게 편성하고 지출업무를 수행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회의운영비**는 기관의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회의** 시 회의 개최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 제공**을 포함한 **회의 개최**에 **통상적 소요**되는 **비용**으로 편성

○ 또한 같은 지침에 **행사·홍보비**는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일반수용비, 시설·장비 임차료, 강사료** 등으로 집행하고, 초청 인사 등에 대한 **식비*** 등은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규정

- 그런데 녹색에너지연구원(경영기획실 등 7개부서)은 **회의운영비, 행사실비보상비**나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하는 '마을로 프로젝트 전담매니저 워크숍 식대' 등 23건 44,744천원을 **행사·홍보비**에서 **부적정** 집행

- 그로 인하여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 초래

☞ 앞으로 행사·홍보비 등 사업비 지출이 세출예산 과목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요구"** 조치

8 직원 복무 관리 부적정

□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산업의 발전 도모를 위하여 106명 직원(정규 63, 비정규 43)이 복무 중

1. 공가 사용 부적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건강검진 횟수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실시하도록 규정

○ 또한 「녹색에너지연구원 복무규정」 제13조 등에 직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가**를 **허가**하고, **공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

○ 한편 녹색에너지연구원은 ’19년부터 ’21년까지 3차례 2년마다 종합검진비(1인당 30~35만원 지원)를 지원하면서 **건강검진 대상자**는 **1일 공가 처리**한다는 **‘종합검진 지원 계획’**을 내부결재 받아 **전 부서**에 **시행**

- 그런데 녹색에너지연구원(경영기획실)은 ‘19년부터 ’21년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해당하지 않는 ○○○ 등 4명이 **공가**를 **부적정 사용**하고, ○○○ 등 2명에게 **22만원 연차보상비**를 **부당 지급**

2. 대체휴무 사용 부적정

○ 「녹색에너지연구원 복무규정」 제6조의2에 부서장은 직원이 **휴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도록 규정

- 그런데 녹색에너지연구원(경영기획실 등 9개 부서)은 **휴일 8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만 **대체휴무**를 **실시**하도록 해야 되는데도 **평일근무자 및 휴일 8시간 미만 근무자**인 ○○○ 등 **61명**이 대체휴무를 부적정하게 사용

○ 그로 인하여 **직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직원 복무 기강**을 **부실**하게 하는 결과 초래

☞ 「국민건강보험법」에 해당되지 않은 종합건강검진을 공가 처리하도록 ‘종합검진 지원 계획’을 결재받아 전 부서에 시행하여 복무규정 위반을 초래한 前 ○○○에게 **“훈계요구”** 조치

☞ 앞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에만 공가로 처리하도록 하고, 휴일근무 8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만이 대체휴무를 실시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⑨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업무처리 부적정

□ 녹색에너지연구원(태양에너지연구실 등 3개 부서)은 '19. 1월부터 '21. 12월까지 **16건**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 **28건**의 **선금**을 지급

1.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등에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필요한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 또한 「계약집행기준」에 사업부서는 **공사, 용역, 물품**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 **분할 발주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

○ 그리고 「낙찰자 결정기준」에 사업부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사업 검토서를 작성 후 계약부서를 경유하여 **일상감사부서**의 **계약 타당성**을 **검토**받도록 규정

- 그런데 녹색에너지연구원(태양에너지연구실 등 3개 부서)은 6건 사업*이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닌 **공사 비율**이 **최소 5.9%**에서 **최대 89.6%**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분할발주 검토 없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부적정**하게 **추진**

* '100kW급 ㅇㅇ용 ㅇㅇ ㅇㅇㅇ 모듈 전용 ㅇㅇ닝 및 배수 ㅇㅇㅇ O&M 시스템 개발 등

- 또한 **16건**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일상감사**를 통한 **타당성 검토 없이 계약 체결**

○ 그로 인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닌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부적정**하게 추진하는 등 **계약법령**의 **취지**를 **훼손**한 결과 초래

2. 선금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 「계약집행기준」에 계약담당자는 선금 지급 시 **증권** 또는 **보증서** 발급 및 **보증·보험금액, 보증·보험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하고 **선금**을 **전액 사용**한 후 **사용내역서**를 받도록 규정

* (보증·보험금액)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
(보증·보험기간) 선금 지급일 이전부터 이행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

- 그런데 녹색에너지연구원(경영기획실)은 선금 지급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 ○○○○ 연계용 AC22.9kV 선로 구축공사 감리용역'은 **증권** 또는 **보증서 없이 신청서**만 **제출**받고 '21. 12. 28. **선금**을 **지급**

- 또한 선금보증보험은 선금액에 상당한 이자액을 가산하여 설정하여야 하는데도 '○○○○ 전용 물류창고 신축 전기공사' 등 **5건**은 **선금**에 **이자 상당액**을 **미가산**한 채 **보증증권을 제출받았고**

- 그리고 보증기간을 **선금지급일 이전**부터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하는데도 '○○시 ○○ 하수 처리시설 내 지정 수목 이식 벌목 및 식재공사'에 대해 **선금지급일 이후**부터 설정하는 등 **4건**은 **보증기간**을 **잘못 설정**

- 아울러 선금 사용 확인을 위한 사용내역서를 받아야 하는데도 '○○시 ○○ 하수 처리시설 내 지정 수목 이식 벌목 및 식재공사' 등 **20건**은 **선금 전액**을 **사용한 후**에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지 않음**

○ 그로 인하여 선금 지급액에 대한 채권확보 조치 및 사후관리 소홀

☞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을 일상감사부서에 의뢰하여 타당성을 검토받지 않고 계약을 추진한 現 ㅇㅇㅇ **"훈계요구"** 조치

☞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선금 지급 업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업무를 처리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4 모범사례

1 여수 묘도지역 환경 대기질 조사

여수 묘도지역에서 대기오염 민원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인 환경 대기질 조사를 통해 원인물질 추정 및 민원 해결 방안 모색

□ 현황 및 문제점

○ ○○제철소 인근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

- 언론보도(KBS) “○○○ ○○제철소 인근지역 환경오염 심각성 지적”('21. 2. 21.)

○ 묘도지역 기존 환경조사 자료 미공개로 인해 주민들의 불신감이 고조하여 대기질 현황과 오염성분 및 발생원에 대한 환경실태 조사 필요

□ 조치 사항

○ 묘도지역 환경 대기질 **실태조사**('21. 3.~7.) 및 **주민설명회 개최**('21. 9. 10.)

- (**실 태 조 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31개 항목 및 납, 철, 망간, 구리 등 중금속 성분 14개 항목 분석 * 대기오염 이동 측정차량 운영
- (**설명회개최**) 묘도 및 주변지역 대기질 현황과 오염 성분 및 추정결과 설명

○ 구체적인 오염성분과 발생원(철성분 유입원-광양제철) 분석 결과에 대한 인터뷰 및 언론 보도(○○○, ○○○ 등)

○ 묘도동 신규 중금속측정소 설치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21. 9. ~)

□ 추진 성과

○ (**예산절감**) 환경 대기질 조사 실시로 용역비 예산 절감

- 대기오염 이동 측정차량 운영 및 약 5개월간 환경실태조사로 3억원 이상 절감
  · 국립환경과학원「○○마을 주민 환경보건평가」용역사업(3억 5천만원 소요)

○ (**신뢰행정**) 주민설명회 개최로 주민들의 호평과 행정 신뢰도 향상

- “수십년간 비슷한 조사가 이어져 왔지만 주민들에게 결과를 알려준 조사는 이번 조사(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가 유일합니다.”(○○○ '21. 11. 17.)

○ (**도민보호**) 묘도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 및 건강상 위해 예방에 기여**

2 코로나19 극복 총력 대응

중수본 명령, ‘20. 2. 28.까지 전체 입원환자 소개 완료,「감염병 전담병원」지정, ‘20. 3. 2.부터 ‘22. 7월 현재까지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를 위한 비상근무체계 전환 극복 총력 대응

□ 현 황

○ 인 력 : 감염병대응 38명(의사 3, 간호사 26, 의료기사 등 9)

○ 시 설 : 입원실 76실 282병상 부지 22,898㎡, 건물 17,106㎡

- 입원실 음압격리병상 4실 4병상, 일반격리병상 4실 12병상 포함

○ 장 비 :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171종

- 감염병 격리병상 전용장비 환자감시장치 등 17종 포함

□ 추진상황

○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강화

- ’20. 2. 1. 의료원 자체 감염병 격리병동(8실, 16병상) 운영계획 수립
- ’20. 2.21. 중수본 병상확보 명령 및 감염병 전담병원(관리기관) 지정
- ’20. 2.28. 입원병상 전체 **282병상 소개 완료 후 전담 168병상 전환**
- ’20. 4.28. 전담병원 지정해제 및 병상(77병상) 1차 감축, 외래진료 개시
- ’20. 5. 6. 2차감축 77병상, 전남 **전담 14병상 유지**, 입원진료 개시
- ’20. 7.10. 광주 등 지역사회 확진자 증가, **전담병상 49병상 확대**
- ’20. 8.23. 전남 확진자 급증, **추가 40병상 확보, 전담병상 89병상 확대**
- ’20.11.20. 지역 확진자 급증, **추가 15병상 확보, 전담병상 104병상 확대**
- ’20.11.26. 지역 확진자 증가, **추가 25병상 확보, 전담병상 129병상 확대**
- ’21.11.24. 지역 확진자 증가, **추가 21병상 확보, 전담병상 150병상 확대**
- ’22. 4.18. 확진자 감소, 1차 재감축 50병상, **전담병상 100병상 유지**
- ’22. 5. 2. 확진자 감소, 2차 재감축 10병상, **전담병상 90병상 유지**
- ’22. 5.18. 확진자 감소, 3차 재감축 70병상, **전담병상 20병상 유지**
- ’22. 6.10. 확진자 감소, 4차 재감축 13병상, **전담병상 7병상 유지**

○ **선별진료소** 운영실적

- ’20. 1.23.～’22. 5.31.까지 **검사실적 23,410명**(음성 22,506, 양성 904)

○ **감염병 치료병상** 운영실적

- ’20. 1.23.～’20. 5. 9.까지 **대구환자 30명**(전원 2, 완치 28)
- ’20. 7. 3.～’22. 4.27.까지 **광주환자 28명**(전원 2, 완치 26)
- ’20. 7.28.～’22. 2. 9.까지 **서울·경기환자 20명**(전원 2, 완치 18)
- ’20. 7.28.～’22. 3. 4.까지 **검역·기타환자 30명**(완치 30)
- ’20. 2.29.～’22. 5.31.까지 **전남환자 2,426명**(사망14, 전원42, 완치2,361, 입원중9)

□ 향후계획

○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집단감염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 병상 대응 체계 구축·운영하여 병상 효율화 추진

3 전남-경기 지역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운영

전남-경기 지역상생나눔 협약('16. 5.)으로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여 운영수익금을 양 도 지역 주민에게 지역 인재육성 기금 지급

□ 사업개요

○ 과 제 명 : 전남-경기 지역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운영

○ 사업기간/운영기간 : '17.~'20./'20.~'38.

○ 총사업비/설치용량 : 60억원(전액 경기도비 60억원)/3㎿

○ 시공 및 유지관리 : 녹색에너지연구원

□ 추진 실적

추진연도	사업기간	사업비(억원)	지역/용량(㎾)	비고
1 차	'17. 1.~'18. 3.	20	가평군/750, 양평군/250	2018. 4월부터 상업운전 중
2 차	'18. 1.~'20. 6.	20	동두천/1,000	
3 차	'18. 5.~'20.11.	20	광주시/1,000	

○ 지금까지 전남도 인재육성 장학기금 지급 : 총 255백만원

※ 연도별 지급액(단위 : 백만원) : '18(25), '19(50), '20(80), '21(100)

- 운영수익금중 SMP는 전남도(녹에연), REC는 경기도(발전소 설치시군)에서 관리

□ 기대 효과

○ 전남도 원전지역 주변 장학금 지급으로 지역 우수 인재 창출 기여

○ 경기도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지역 에너지 자립율 향상

□ 향후 추진계획

○ '22년 지역인재육성 장학기금 기탁식 : '22. '12.

※ 2038년까지 발전소 운영수익금으로 매년 1억여원 정도 기탁예정

Ⅳ. 처분요구서

목 차

【 보건환경연구원 】

① 용역 검수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 41

②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처리 부적정(시정,주의) ····· 46

③ 공가사용 및 연가보상비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 51

④ 지정 및 의료폐기물 관리 업무처리 부적정(시정, 통보) ····· 54

⑤ 위험근무수당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시정, 주의) ····· 61

⑥ 공사·물품 하자검사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 66

⑦ 시험의뢰 및 검사 수수료 산정 업무처리 부적정(통보) ····· 70

⑧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업무처리 부적정(통보) ····· 74

【 순천의료원 】

⑨ 직원 신규임용 및 임원 공개모집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 77

⑩ 개원 100주년 기념관 등 자산관리 부적정(훈계, 시정, 주의) ····· 82

⑪ 진료용 ○○○ 연장계약 등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기관경고, 징계, 훈계) ····· 88

⑫ 재정(신원)보증보험료 납부 업무처리 부적정(시정) ····· 94

⑬ 의료기기 구매 할인 규정 미적용(주의) ····· 97

⑭ 입원 및 외래환자 진료비 미수금 관리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통보) ····· 100

⑮ 임직원 보수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개선, 주의) ····· 103

⑯ 진료성과평가 업무처리 부적정(기관경고, 주의) ····· 108

⑰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임직원 소개 감면 부적정(주의, 통보) ····· 113

⑱ 순천의료원 관사 관리 부적정(훈계, 시정, 통보) ····· 117

【 녹색에너지연구원 】

⑲ 지식재산권 관리 업무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 121

⑳ 보조금 정산 업무처리 부적정(시정) ····· 127

㉑ 공사감독관 업무추진 부적정(시정, 통보) ····· 131

㉒ 일상감사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통보) ····· 136

㉓ 간접공사비 등 정산 업무처리 부적정(시정) ····· 142

㉔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시정, 주의) ····· 147

㉕ 행사홍보비 예산 집행 부적정(주의) ····· 152

㉖ 직원 복무 관리 부적정(훈계, 주의) ····· 155

㉗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업무처리 부적정(훈계, 주의) ····· 160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용역 검수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미생물과, 감염병조사1과)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작업환경측정 연구용역 등 [별표] “용역 계약 체결 명세”와 같이 27건, 585백만원의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소관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절 용역계약의 체결 편에 따르면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 집행기준」 제5절 용역계약의 이행 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고, 착수 시에는 관련 법령

에서 정한 서류와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공동계약 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4)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착수 시에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성·공공성을 저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등[1]은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 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동일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체결된 용역 계약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과업내용서,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착수신고서 등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철저히 검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내용이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미생물과, 감염병조사1과)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간○○○분석기 유지보수 용역’ 등 4건의 용역을 검수하면서 과업내용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착수신고서 등에 따라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철저히 검수하여야 하는데도, 2021. 10. 14. ㈜○○○과 계약한 ‘실시간○○○분석기 수리 및 교정’을 검수하면서 계약상대자인 ㈜○○○의 소속 직원이 아닌 ○○○○○○○○○○○○○○ 회사의 직원인 ‘○○○’이 해당 용역을 수행한 후 검수공무원

1) ①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②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③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④ 기타 제①호부터 제③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이 검수하였는데도 20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알지 못하고 있고 [표 1] “계약상대자의 소속 직원이 아닌 인력이 수행한 부적정 용역 현황”과 같이 4건, 26.6백만원의 용역을 부적정하게 검수하였다.

[표 1] 계약상대자 소속 인력이 아닌 인력이 수행한 부적정 용역 현황(2020년~2021년)

(단위 : 백만원)

일련번호	소관부서 (검수공무원)	용역명	계약체결일 (완료일)	계 약 금 액	계약 상대자	부적정 사유
		4개 용역		26.6		
1	감염병조사1과 (○○연구사 ○○○)	실시간○○○분석기 수리 및 교정	’21.10.14. (’21.10.18.)	8.1	㈜○○○	○○○[2](19○○.02.28.)이 ㈜○○○ 직원이 아닌데도 허위 재직증명서 제출
2	감염병조사1과 (○○연구사 ○○○)	생물안전○○○ 검증	’21.11.17. (’21.11.30.)	5.4	○○○	○○○(19○○,09.14.)이 ○○○ 직원이 아닌데도 허위 재직증명서 제출
3	감염병조사1과 (○○연구사 ○○○)	실시간○○○분석기 교정	’21.11.17. (’21.11.24.)	5.9	㈜○○○	○○○(19○○○.02.28.)이 ㈜○○○ 직원이 아닌데도 허위 재직증명서 제출
4	미생물과 (○○연구사 ○○○)	실시간○○○분석기 유지보수	’21.11.05. (’21.10.14.)	7.2	㈜○○○	○○○(19○○○.02.28.)이 ㈜○○○ 직원이 아닌데도 허위 재직증명서 제출

자료 : 보건환경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감염병조사1과는 ‘2021년 생물안전○○○ 연구시설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면서 계약상대자인 ㈜○○이 2021년 4월 현지점검 참여기술자를 당초 착수신고서에 제출된 ○○○ 등 9명의 참여기술자를 투입하여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당초 착수신고서 상 참여기술자가 아닌 ○○○ 등이 현지 확인을 하는 등 2021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9회에 걸쳐 [표 2] “생물안전○○○연구시설 유지보수 용역 참여기술자 부적정 검수 현황”과 같이 착수신고서 상의 유지보수 참여기술자가 아닌 다른 인력이 현지점검하여 용역을 수행하였는데도 참여기술자의 교체 요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소관 부서의 검수공무원[3]이 검수를 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2) 2022. 7. 11.부터 2022. 7. 15.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종합감사기간 동안 재직여부를 확인한 결과, ‘○○○’은 ○○○○○○○○○○○○ 회사 직원이고, ‘○○○’는 ㈜○○○○ 직원으로 확인됨

3) (검수공무원) 전 감염병조사1과(현 미생물과) 보건연구사 ○○○

[표 2] 생물안전ㅇㅇㅇ 연구시설 유지보수 용역 참여기술자 부적정 검수 현황(2021.4~12월)

용역명	착수신고서 상 참여기술자	실제 투입된 참여기술자 명단		부적정 사유
		점검월	명단	
2021년 생물안전 ㅇㅇㅇ 연구시설 유지보수 용역	우ㅇㅇ 백ㅇㅇ 변ㅇㅇ 장ㅇㅇ 이ㅇㅇ 서ㅇㅇ 윤ㅇㅇ 조ㅇㅇ 하ㅇㅇ	4월	(현지확인) 서ㅇㅇ, 양ㅇㅇ (현지확인없이 검토,확인) 백ㅇㅇ	착수신고서와 다른 참여기술자 투입 (양ㅇㅇ)
		5월	(현지확인) 서ㅇㅇ. 양ㅇㅇ (현지확인없이 검토,확인) 백ㅇㅇ	착수신고서와 다른 참여기술자 투입 (양ㅇㅇ)
		6월	(현지확인) 조ㅇㅇ, 양ㅇㅇ (현지확인없이 검토,확인) 백ㅇㅇ	착수신고서와 다른 참여기술자 투입 (양ㅇㅇ)
		7월	(현지확인) 조ㅇㅇ. 양ㅇㅇ (현지확인없이 검토,확인) 백ㅇㅇ	착수신고서와 다른 참여기술자 투입 (양ㅇㅇ)
		8월	(현지확인) 조ㅇㅇ, 황ㅇㅇ (현지확인없이 검토,확인) 백ㅇㅇ	착수신고서와 다른 참여기술자 투입 (황ㅇㅇ)
		9월	(현지확인) 배ㅇㅇ, 조ㅇㅇ (현지확인없이 검토,확인) 백ㅇㅇ	착수신고서와 다른 참여기술자 투입 (배ㅇㅇ)
		10월	(현지확인) 조ㅇㅇ,배ㅇㅇ (현지확인없이 검토,확인) 백ㅇㅇ	착수신고서와 다른 참여기술자 투입 (배ㅇㅇ)
		11월	(현지확인) 조ㅇㅇ, 배ㅇㅇ (현지확인없이 검토,확인) 백ㅇㅇ	착수신고서와 다른 참여기술자 투입 (배ㅇㅇ)
		12월	(현지확인) 조ㅇㅇ, 배ㅇㅇ (현지확인없이 검토,확인) 백ㅇㅇ	착수신고서와 다른 참여기술자 투입 (배ㅇㅇ)

자료 : 보건환경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착수신고서와 다른 인력이 투입되어 용역이 수행되고 있어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 착수 시 제출된 자료 등에 따라 용역검수 업무가 철저히 추진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감염병조사1과, 약품화학과, 환경조사과, 수질분석과, 토양폐기물과, 대기질관리과, 대기보전과, 농산물검사소)

내　　용

1. 업무 개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은 중금속분석실 등 실험실을 운영하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표 1]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용역 현황”과 같이 ㈜○○○○○○전기안전과 계약을 체결하여 전기, 화공, 가스, 산업위생, 생물,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 등에 대한 점검 및 실험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

[표 1]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용역 계약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용역명	계약일	계약금액	준공일	계약자
합계	6 건		14,750		
2019	2019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실험실 34개소)	2019. 9. 26.	2,450	2019.11.26.	㈜○○○○○전기안전
	2019년 동부지원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용역(실험실 16개소)	2019. 9. 18.	2,200	2019.11.26.	“
2020	2020년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험실 33개소)	2020.10.07.	2,700	2020.11.12.	〃
	2020년 동부지원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용역(실험실 17개실)	2020. 9. 22.	2,250	2020.11.26.	〃
2021	2021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용역 (실험실 33개소)	2021.10.01.	2,900	2021.11.11.	〃
	2021년 동부지원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용역(실험실 18개실)	2021. 7. 16.	2,250	2021.8.19.	〃

자료 : 보건환경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2.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결함사항 보수·보강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 법령(관련 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관 연구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9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르면 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의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제9조에 따른 연구실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실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정기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지침 제16조 제4항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유해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소관 연구실에 대해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발견된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3개월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환경조사과, 수질분석과, 대기질관리과, 토양폐기물과, 약품화학과)는 2019. 9. 26.부터 2021. 10. 14.까지 [표 2] “정밀안전진단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부적정 현황”과 같이 실험실 정밀안전진단 결과 16건의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3개월 이내에 착수하지도 않았고 완료조치를 하지 않아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정밀안전진단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부적정 현황

정밀안전진단일	실험실명(관리부서)	결함사항	개선방안	위반사항
계	16건			
2019.09.26.	환경조사과 수질자동분석기실	○○○ 제어풍속 미흡 : 0.00m/s	○○○○장치(포위식) 제어풍속 상향(0.0.0m/s 이상)	결함사항 보수·보강 불이행
〃	환경조사과 중금속분석실	○○○○장치 제어풍속 미흡 : 0.0m/s	○○○○장치(외부식상방흡인형) 제어풍속 상향(0.0m/s 이상)	〃
〃	환경조사과 크린룸	○○○ 제어풍속 미흡 : 0.0m/s	○○○○장치(외부식측방흡인형) 제어풍속 상향(0.0m/s 이상)	〃
〃	수질분석과 IC/LC실	○○○○장치 제어풍속 미흡 : 0.0m/s	○○○○장치(외부식측방흡인형) 제어풍속 상향(0.0.0m/s 이상)	〃
〃	대기질관리과(대기일반실험실)	○○○○장치 제어풍속 미흡 : 0.0m/s	○○○○장치(외부식상방흡인형) 제어풍속 상향(0.0m/s 이상)	〃
〃	토양폐기물과 2층기기분석실	○○○○장치 미설치	○○○○장치 설치	〃
2020.11.12.	약품화학과 GC실	○○○ 제어풍속 미흡 : 0.0m/s	○○○○장치(외부식측방흡인형) 제어풍속 상향(0.0m/s 이상)	〃
〃	환경조사과 수질자동분석기실	○○○ 제어풍속 미흡 : 0.0m/s	○○○○장치(외부식상방흡인형) 제어풍속 상향(0.0m/s 이상)	〃
〃	환경조사과 중금속분석실	○○○ 제어풍속 미흡 : 0.0m/s	○○○○장치(외부식상방흡인형) 제어풍속 상향(0.0m/s 이상)	〃
〃	환경조사과 크린룸 GC/MS실	○○○ 제어풍속 미흡 : 0.0m/s	○○○○장치(외부식상방흡인형) 제어풍속 상향(0.0m/s 이상)	〃
〃	수질분석과 GC실	○○○ 제어풍속 미흡 : 0.0m/s	○○○○장치(외부식측방흡인형) 제어풍속 상향(0.0m/s 이상)	〃
〃	수질분석과 IC/LC실	○○○ 제어풍속 미흡 : 0.0m/s	○○○○장치(외부식측방흡인형) 제어풍속 상향(0.0m/s 이상)	〃
2021.10.14.	약품화학과 GC실	○○○○장치 제어풍속 미흡 : 0.0m/s	○○○○장치(외부식측방흡인형) 제어풍속 상향(0.0m/s 이상)	〃
〃	환경조사과 수질자동분석기실	○○○○장치 제어풍속 미흡 : 0.0m/s	○○○○장치(외부식상방흡인형) 제어풍속 상향(0.0m/s 이상)	〃
〃	환경조사과 크린룸(GC/MS실)	○○○○장치 제어풍속 미흡 : 0.0m/s	○○○○장치(외부식측방흡인형) 제어풍속 상향(0.0m/s 이상)	〃
〃	대기질관리과(GC/MS실)	○○○○장치 제어풍속 미흡 : 0.0m/s	○○○○장치(외부식측방흡인형) 제어풍속 상향(0.0m/s 이상)	〃

자료 : 보건환경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 등을 사용하는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를 초래하였다.

3. 정밀안전실시결과 공표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 법령(관련 근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지체없이 게시판, 사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 연구활동 종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정기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지체없이 게시판, 사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 연구활동 종사자들에게 알려 안전한 연구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감염병조사1과, 대기질관리과, 대기보전과, 농산물검사소)은 [표 3]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공표 부적정 현황”과 같이 동부지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3건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 차례도 공표하지 않았고, 본원은 2020년 정밀안전진단결과를 273일 도과하여 홈페이지에 공표하였고, 2021년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하여 244일을 도과한 감사 기간 중인 2022. 7. 13에서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3]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공표 부적정 현황

용역명	용역완료일자	공표일	위반사항	담당부서
합계			5건	
2019 정밀안전진단용역(동부지원)	2019.11.26.	-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미공표	대기보전과
2020 정밀안전진단용역(본원)	2020.11.12.	2021.08.12.	273일 도과하여 홈페이지 공표	대기질관리과
2020 정밀안전진단용역(동부지원)	2020.11.26.	-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미공표	농산물검사소
2021 정밀안전진단용역(본원)	2021.11.11.	2022.07.13.	244일 도과하여 종합감사기간 중에 홈페이지 공표	감염병조사1과
2021 정밀안전진단용역(동부지원)	2021.08.19.	2021.08.20.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미공표	농산물검사소

자료 : 보건환경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연구종사자들의 안전환경 조성 및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①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결함사항에 대해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보수·보강 조치를 완료하시고 정밀안전진단실시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시기 바라고(**시정**)

② 앞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착수하고 1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시고,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 라 남 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공가사용 및 연가보상비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운영지원과, 미생물과, 대기보전과, 산업폐수과)

훈 계 대 상 자 ○○○○장 지방○○○○○ ○○○

내 용

1. 업무 개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은 2019. 12월부터 2021. 12월까지 소속 직원이 국가건강검진 및 특수건강진단의 사유로 공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가하였다.

지방○○○○○ ○○○은 2020. 1. 15.부터 2022. 1. 2.까지 ○○○○과에서 ○○○○과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2. 관계 법령(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4항에 따르면 건강검진의 횟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건강검진 횟수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가사용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급 공가를 준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 등을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직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사유에 맞게 연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운영지원과, 미생물과, 대기보전과, 산업폐수과)은 2019. 12월부터 2021. 12월까지 [별표 1] “공가 부당 사용 및 연가보상비 부당 수령 현황”과 같이 ○○○○과 ○○○ 등 3명이 금요일 등에 공가를 신청하고 공휴일에 건강검진을 받는 등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고, 운영지원과 ○○○ 등 2명은 사무직으로 2년마다 1회 건강검진을 하여야 하는데도 매년 건강검진을 하면서 부적정하게 공가를 사용하였는데도 20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알지 못하고 있어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또한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여 연가보상비가 1인당 적게는 37천원에서 많게는 204천원 등 총 5명에게 928천원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1] 공가 부당사용 및 연가보상비 부당 수령 현황(2019.12월~2021.12월)

(단위 : 원)

연번	소속	직위(직급)	성 명	공가 신청일	실제 건강 검진일	연가보상비 등 부당 수령액(원)	위반내용
합계			5명			928,580	
1	○○○○과	○○○○장 (지방○○○○○)	○○○	2020.07.10.(금)	-	176,580	공가사용 위반
				2021.06.23.(수)	2021.06.19.(토)	184,370	〃
2		(지방○○○○○)	○○○	2021.07.09.(금)	-	37,420	〃 (4시간)
3	○○○○과	○○○○○장 (지방○○○○○)	○○○	2020.06.15.(월)	2020.06.13.(토)	123,550	〃
4	○○○○과	○장 (지방○○○○○)	○○○	2020.06.24.(수)	2020.06.24.(수)	204,180	공가사용 위반 (2년마다 1회 건강검진대상)
5	○○○○과	○○○○○장 (지방○○○○○)	○○○	2021.08.09.(월)	2021.08.09.(월)	202,480	〃

자료 : 보건환경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근무기강이 무너지고 연가보상비 928,580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① 부당한 공가사용으로 지급되지 않아야 할 연가보상비 928,58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고**(시정)**

② 공가신청 한 후 실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복무규정을 2회 위반한 지방○○○○○ ○○○를 훈계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훈계)**

전 라 남 도

시정요구·통보

제 목 지정 및 의료폐기물 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미생물과, 식품분석과, 약품화학과, 환경조사과, 수질분석과, 토양폐기물과, 대기질관리과, 대기보전과, 산업폐수과, 악취관리과, 감염병조사2과, 농산물검사소, 운영지원과)

내 용

1. 업무 개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는 2019. 12월부터 20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실험실에서 시험·검사 후 배출되는 지정폐기물[4] 및 의료폐기물[5]을 자체 보관시설에 별도 보관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탁처리하고 있다.

2. 지정폐기물 보관·관리 부적정

가. 관계 법령(관련 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4항 나호 6)목에 따르면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

---

4)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5)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4항 나 호 9)목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의 보관 장소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폐산 및 폐알칼리 등 지정폐기물을 보관할 때는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총량이 3톤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부서 등을 표지판에 적어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식품분석과, 약품화학과, 환경조사과, 수질분석과, 토양폐기물과, 대기질관리과, 대기보전과, 산업폐수과, 악취관리과, 농산물검사소)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총량이 3톤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만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표 1]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부적정 현황"과 같이 보관기간을 각각 93일, 195일 도과하여 보관하고 있어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표 1]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부적정 현황

배출부서	지정폐기물 종류	보관기간	위반내용
식품분석과, 약품화학과, 환경조사과, 수질분석과, 토양폐기물과, 대기질관리과	폐유기용제	2021.02.20.~ 2022.05.24.	보관기간 93일 도과
동부지원 대기보전과, 산업폐수과, 악취관리과, 농산물검사소	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	2020.06.11.~ 2021.12.23.	보관기간 195일 도과

자료 : 보건환경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식품분석과, 약품화학과, 환경조사과, 수질분석과, 토양폐기물과, 대기질관리과, 대기보전과, 산업폐수과, 악취관리과, 농산물검사소)은 지정폐기물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부서 등을 표지판에 적어야 하는데도 [표 2] “지정폐기물 보관표시 부적정 현황”과 같이 보건환경연구원 본원은 보관창고의 표시판에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용량,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지 않고 동부지원에서는 보관용기에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부서 등을 적어 넣지 않아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2] 지정폐기물 보관표시 부적정 현황

배출부서	지정폐기물 종류	보관량	위반내용
식품분석과, 약품화학과, 환경조사과, 수질분석과, 토양폐기물과, 대기질관리과	폐유기용제	○,○○○㎏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표시 부적정
동부지원 대기보전과, 산업폐수과, 악취관리과, 농산물감사소	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	○○○㎏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부서 표시 부적정

자료 : 보건환경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폐유, 폐산 등 지정폐기물이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아 누출 등 사고 발생 시 인체 및 생태계에 위해를 줄 수 있으며 책임자 규명이 곤란하게 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3. 의료폐기물 보관·관리 부적정

가. 관계 법령(관련 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5항 다호 3)목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세척이 쉽게 설치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냉장시설은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관중에는 냉장시설의 내부 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환경부의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2장 2.2 보관기준 및 방법에 따

르면 위해의료폐기물(병리계)은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세척이 쉽고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하고 소독약품 및 장비를 비치해야 하며 밖에서 볼 수 없는 구조, 외부인의 출입제한, 주 1회 이상 약물소독, 보관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배출자 보관기간은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위해의료폐기물(병리계)을 보관할 때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하고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세척이 쉽고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하고 소독약품 및 장비를 비치해야 하며 밖에서 볼 수 없는 구조, 외부인의 출입제한, 주 1회 이상 약물소독, 보관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관리책임자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출입구와 출입문에 각각 설치해야 하며 배출자 보관기간을 15일까지만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미생물과, 감염병조사2과)은 위해의료폐기물(병리계)을 보관 업무를 처리하면서 [표 3] “보건환경연구원 의료폐기물 보관 부적정 현황”과 같이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을 같은 공간에 보관하고 있고, 창고 안벽은 부식이 우려되는 금속자재로 되어 있으며 농업용 비료, 먼지 등이 방치되어 있어 청결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하고 있고, 소독약품 및 장비는 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주 1회 약물소독 실시도 하지 않고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양 및 관리책임자 등을 기재한 표지판도 출입구와 출입문에 설치하지 않았으며 배출자 보관기간을 2022. 7. 15. 감사일 현재 짧게는 28일부터 길게는 52일까지 도과한 채 보관하고 있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특히 감염병조사2과는 2022. 7. 15. 감사일 현재 의료폐기물을 밀폐된 전용 보관장소가 아닌 상부가 개방된 불법건축물에 보관하고 있어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다.

[표 3] 보건환경연구원 의료폐기물 보관 부적정 현황

위치 (관리책임자)	위반사항
본원 (미생물과 ○○○)	□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을 같은 공간에 보관(48㎡) □ 부식이 우려되는 금속자재로 설치 □ 청결불량(농업용 비료, 먼지 등 방치되어 청결 불량 □ 소독약품 및 장비 없음, 주1회 약물소독하지 않음 □ 관리책임자 변경 안됨 (현 관리자 ○○○ 2020. 6. 13. 변경) □ 보관기간 도과된채 보관 중(52일, 28일) - 도과기간(52일) : 2022.05.09.~2020.07.15. - 도과기간(28일) : 2022.06.02.~2022.07.15.
동부지원 (감염병조사2과 ○○○)	□ 상부가 개방된 불법 건축물(2.8㎡)에 보관 □ 목재 파렛트, 흙, 먼지 등 방치되어 청결 불량 □ 소독약품 및 장비 없음, 주1회 약물소독하지 않음 □ 표지판 설치 안됨

자료 : 보건환경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의료폐기물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어 의료폐기물 누출 등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와 책임자 규명이 곤란할 수 있는 우려를 초래하였다,

4. 불법건축물 관리 부적정

가. 관계 법령(관련 근거)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5 제1항에 따르

면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법 제7조의5 제1항 전단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법 제7조의5 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허가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은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군수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해당 건축물에 대해 규정에 맞도록 허가 신청하여 허가받은 후 건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운영지원과)은 [표 4] “보건환경연구원 불법건축물 현황”과 같이 ‘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보관창고’ 1개소를 증축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신청한 후 허가를 받은 후 건축하여야 하는데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8. 3월에 건축한 후 20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위법하게 사용하고 있어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4] 보건환경연구원 불법건축물 현황

(단위 : ㎡, 천원)

관리부서	위 치	위반내용	용 도	위반면적	시설일	적발일	시설비
운영지원과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 ○○○	건축법 제11조 (무허가 건축물)	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보관창고 (폐산보관창고 ○.○㎡, 폐유기용제보관창고 ○.○㎡, 의료폐기물보관창고 ○.○㎡)	○.○㎡	2018.03.	2022. 07.12.	1,730

자료 : 보건환경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어 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의 누출 등 사고가 발생될 우려를 초래하고 1,730천원의 예산이 불법건축물에 부적정하게 집행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①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지정폐기물의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적법하게 준수하시고 보관창고의 표지판에 지정폐기물의 종류·보관가능량·관리책임자·배출부서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해 의료폐기물의 보관은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에 보관하시고 보관창고의 안벽과 바닥은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청결하게 관리하고 소독약품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주1회 약물소독을 실시하시고 보관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양 및 관리책임자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출입구와 출입문에 설치하여야 하며 배출자 보관기간을 적법하게 준수하시기 바라고**(시정)**

② 불법건축물의 부지의 용도, 건폐율 등을 고려하여 양성화 또는 철거방안을 검토하고 불법건축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전 라 남 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위험근무수당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미생물과, 약품화학과, 환경조사과, 수질분석과, 토양폐기물과, 대기보전과, 산업폐수과, 농산물검사소)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은 전남 도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보건과 환경 분야에 걸쳐 시험검사와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7의 지급구분표[1] 및 별표 8의 등급별 구분표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5.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위험근무수당은 9개 부문[2]의 업무에 상시 종사함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기준은 1) “직무의 위험성”, 2) “상시 종사” 여부, 3)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직무의 위험성은 영 별표 8의 각 부문과 등급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며, 상시 종사란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일정기간 또는 계속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일시적·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

1) ① 갑종 월 60,000원, ② 을종 월 50,000원, ③ 병종 월 40,000원
2) ① 해상 부문, ② 방역·보건 및 수의 부문, ③ 공업연구 부문, ④ 농수산업 연구 부문, ⑤ 상·하수도 및 분뇨처리 부문, ⑥ 지하철 부문, ⑦ 삭제, ⑧ 자동차 배출가스측정 부문, ⑨ 각 부문

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직접 종사란 해당 기관 혹은 부서 내에서도 업무 분장상에 있는 위험한 작업 환경과 장소에 직접 노출되어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전라남도 회계과는 2020년 7월 8일 행정안전부의 위험근무수당 신청기준 준수(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 따라 위험근무수당 지급 기준인 직무의 위험성, 상시 종사 여부,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적법하게 수당을 신청하도록 보건환경연구원 등 모든 실·과·소에 문서로 통보한 바 있다.

한편 전라○○는 2019년 전라○○ 보건환경연구원 종합감사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에 위험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질의 및 회신 결과[3]에 따르면 과장 등 관리자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의 업무는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서 소속 공무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할 것인 바, 이러한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은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해당 업무를 직접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총괄 업무 외에 담당자와 동일하게 위험한 직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당 지급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은 사례도 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위험근무수당 신청 및 지급받을 때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소속 직원들의 담당 업무를 파악하여 실제로 위험한 직무에 상시·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하여 적법하게 회계과에 수당을 신청하고 등급별 구분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미생물과, 약품화학과, 환경조사과, 수질분석과, 토양폐기물과, 대기보전과, 산업폐수과, 농산물검사소)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별표] “위험근무수당 부적정 지급 명세”와 같이 과장급 이상 11명이 직무의 상시·직접 종사 여부 등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수당을 신청하여 9,030천원을

3) 전라○○에서 행정안전부에 위험근무수당 지급 관련 질의(2019. 11. 5.)

지급 받았다.

그로 인하여 위험성 직무에 상시·직접 종사하지 않은 과장들에게 위험근무수당 9,031천원이 잘못 지급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보건환경연구원은 ① 환경부서 4개과(수질분석과, 토양폐기물과, 대기보전과, 산업폐수과)에서 대전지방법원 판례(2010가 6254)와 직·간접적으로 검사업무에 관련이 있으므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재검토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판례는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범위, 사무실과 실험실이 판넬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등 사무실 및 실험실의 배치 구조 등을 고려한 판례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우며,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19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종합감사 시('19.10.14.~10.22.) 과장 등 13명에게 부적정하게 지급된 위험근무수당 16,300천원을 회수 조치하도록 한 감사사례도 있다.

또한 위험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의 위험성, 상시 종사(일시적·간헐적 종사자는 제외) 및 직접 종사(위험업무를 직접 수행) 여부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3조 [별표 8] 3. <공업연구부문> 방사선 등 각종 유독성 가스를 이용하여 연구·실험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수산업연구부문> ㉮ 방사선, 유독성 농약, 시약,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사람 ㉯ 토양, 식물체 및 수산물의 시료분석 등에 촉발성 물질, 유해물질 등을 취급하는 사람 9. <각 부문> ㉰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측정을 위하여 굴뚝에 올라가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므로, 수질분석과 등 4개 부서의 과장은 직무의 위험성을 감안하더라도 위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과장급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구실책임자로 지정되

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4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책임자 포함)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어, 과장도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므로 위험근무수당 대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의 규정은 연구실책임자를 포함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시행에 관한 규정일 뿐이며, 위험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① 과장급 이상 11명에게 부적정하게 지급된 위험근무수당 9,030,920원을 반납하도록 조치하고(**시정**)

② 앞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험성 직무와 상시·직접 종사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적법하게 신청하고 지급받는 등 위험근무수당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물품 하자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운영지원과, 미생물과, 감염병조사1과, 약품화학과, 환경조사과, 수질분석과, 토양폐기물과, 대기질보전과, 대기보전과, 산업폐수과, 악취관리과, 농산물검사소)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동부지원 건립 소방공사’ 등 19건의 공사와 ‘미생물 동정 질량분석기’ 등 42종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지방계약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지방계약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은 공사 및 물품의 경우 검사 또는 검수를 완료한 이후 하자 담보책임 존속기간 안에 있는 사업에 대해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공사의 경우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 전 최종 하자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운영지원과)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표] “공사별 하자검사 부적정 현황”, [별표 1] “공사 하자담보 기간 명세”와 같이 하자담보 존속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공사 19건의 시설공사 중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건립 ○○공사 등 4건에 대하여 정기검사 3회, 최종검사 1회 등 총 4회의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신축공사(○○○○설비) 등 3건은 하자담보 존속기간이 종료된 이후 최소 12일에서 최대 58일이 도과된 이후에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등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공사별 하자검사 부적정 현황(2019. 12월 ~ 2021. 12월)

(단위 : 천원)

공사명	공사금액	준공일	하자 보증금	보증기간		하자검사	
				시작일	종료일	정기 검사	최종 검사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건립 ○○공사	57,748	’18.02.22.	1,175	’18.03.05.	’21.03.04.	실시(2회), 초과 실시(1회) (’20.4./’20.12./’21.5.)	미실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신축공사 (○○○○설비)	222,397	’18.03.18.	6,645	’18.03.23.	’21.03.22.	실시(2회), 미실시(1회) (’20.4./’20.12.)	초과 실시 (’21.5.)

공사명	공사금액	준공일	하자 보증금	보증기간		하자검사	
				시작일	종료일	정기 검사	최종 검사
청사 ○○○○실 창호설치 공사	25,613	’19.10.17.	768	’19.10.24.	’20.10.23.	실시(1회), 미실시(1회) (’20.5.)	초과 실시 (’20.12.)
실험실 ○○공사	8,017	’20.12.17.	801	’20.12.16.	’21.12.15.	실시(2회), 미실시(1회) (’20.12./’21.5)	초과 실시 (’21.12.27.)

자료 : 보건환경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미생물과 등 11개 부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별표 2] “물품 하자담보 기간 명세”과 같이 총 42종의 물품에 대한 검수를 한 이후 20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공사와 물품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19건의 공사와 42종의 물품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등 하자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생　　략

[별표 2] 생　　략

전 라 남 도
통 보

제 목 시험의뢰 및 검사 수수료 산정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수질분석과, 토양폐기물과)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은 2019. 12월부터 2021. 12월까지 시험의뢰인이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의뢰를 신청할 경우 시험검사에 따른 수수료와 소속직원이 직접 현지출장 후 시료를 채취할 경우 여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시험의뢰인으로부터 납부받아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5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57조에 따르면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의뢰 및 검사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시험 수수료와 성적서 재발급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 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적용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시험의뢰자는 관계공무원

이 현지출장을 하여야 할 경우 그 출장공무원의 여비를 사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비는 「전라남도 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전라남도 공무원 여비조례」 [별표 1]에 따르면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버스)운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공용의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라남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의뢰 및 검사 조례」에 따라 시험의뢰인에게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관계공무원이 현지출장을 하여야 할 경우 수수료에 포함된 여비를 산정할 때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 수질분석과는 2020. 11. 2.[1] 먹는물·지하수 출장에 따른 수수료 변경 계획을 수립하면서 먹는물·지하수 출장에 따른 여비를 포함하여 수수료를 산정할 시 도민의 경제적 부담과 지역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자가용차량을 적용하여 여비를 산정하는 방법에서 관용차량을 적용한 여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산정방식을 변경하도록 하면서 목포, 무안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20,000원의 여비를 산정하고 그 외 20개 시군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60,000원의 여비를 산정하여 시험의뢰인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으며, 토양폐기물과는 토양폐기물 검사에 따른 수수료 중 관계공무원 현지출장에 따른 여비 수수료를 자동차(버스)운임을 적용하여 적게는 40,000원부터 많게는 161,800원을 추가하여 부과하여 시험의뢰인으로 징수받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분석·토양폐기물 검사 등을 의뢰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관계공무원이 현지출장으로 인하여 여비를 추가

1)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수질분석과-○○○○(2020. 11. 2.) 「먹는물・지하수 출장에 따른 수수료 변경 계획」

할 경우에는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징수하여야 하는데도 [표] “시험검사 의뢰 시 여비 수수료 단가 현황”과 같이 먹는물·지하수 검사에 필요한 시료 채취시 출장으로 인한 여비는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의 여비를 산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토양폐기물과는 폐기물 검사에 필요한 시료 채취 시 출장으로 인한 여비는 자가용 차량을 이용할 경우의 여비를 산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시험의뢰 건당 적게는 20,000원부터 많게는 101,600원까지 많이 부과·징수하고 있어 시험의뢰인에게 다르게 부과·징수하고 있다.

[표] 시험검사 의뢰 시 여비 수수료 단가 현황

시군	여비(원)			시군	여비(원)		
	토양 폐기물 (A)	먹는물 ·지하수 (B)	차액 (A-B)		토양 폐기물 (A)	먹는물 ·지하수 (B)	차액 (A-B)
목포	40,000	20,000	20,000	장흥	114,000	60,000	54,000
여수	136,400	60,000	76,400	강진	104,800	60,000	44,800
순천	118,400	60,000	58,400	해남	108,400	60,000	48,400
나주	109,200	60,000	49,200	영암	100,000	60,000	40,000
광양	126,800	60,000	66,800	무안	40,000	20,000	20,000
담양	116,800	60,000	56,800	함평	100,000	60,000	40,000
곡성	126,000	60,000	66,000	영광	111,600	60,000	51,600
구례	141,600	60,000	81,600	장성	114,800	60,000	54,800
고흥	161,600	60,000	101,600	완도	132,800	60,000	72,800
보성	125,600	60,000	65,600	진도	108,400	60,000	48,400
화순	115,200	60,000	55,200	신안	86,000 + 도선비	60,000	26,000 + 도선비

자료 : 보건환경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출장공무원 2인 기준)

그로 인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하는 도민들에게 공평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어 행정의 신뢰가 하락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험의뢰인에게 관계 공무원의

출장이 필요한 시험검사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경우 관용차량 사용 시 여비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등 시험을 의뢰하는 도민에게 검사의뢰 지역 및 검사항목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공평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전 라 남 도

통보(시정완료)

제　　목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토양폐기물과)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은 도내 16개 시군 41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및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년 농약 잔류량을 검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별표 2]에 따르면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마다 골프장별로 농약 잔류량을 검사하여야 하며, 골프장에 채취한 토양과 수질 시료는 즉시 실험하되, 그렇지 못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4℃에서 최대 7일(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추출 후 최대 40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는 2020. 1. 13.[1] 2019년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도내 골프장에서 검사 시료를 채취하여 전처리 추출 과정을 거쳐 냉장 보관하는 경우에는 최대 보관기간인 40일 이내에 분석 실험을 완료하고 앞으로 도내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계획 수립 시 분석 실험장비 및 인력등을 감안하여 권역별로 시료채취 시기를 조정하는 등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처분 하였다.

---

1) 전라남도 감사관-○○○(2020. 1. 13.) 「2019년 직속기관 정기종합감사결과 통보(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18조 제5항에 따르면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고,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은 골프장에서 검사 시료를 채취하여 전처리 추출 과정을 거쳐 냉장보관하는 경우에는 최대 보관기간인 40일 이내에 분석 실험을 완료하여야 하고, 2020. 1. 13.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일 때에는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토양폐기물과)은 2020. 1. 13.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도 2020. 1월부터 2021. 6월까지 장기간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조치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채 [표]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내역”과 같이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위해 ○○시 ○○○○ 등 41개 골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1월부터 6월까지 총 41개소 중 2개소만 40일 내에 실험을 완료하였으나, 39개소는 40일을 넘겨서 적게는 4일부터 많게는 48일까지 경과하는 등 2020. 1월부터 2021. 6월까지 총 162개소 중 104개소의 시료를 적게는 2일부터 많게는 48일까지 기간을 경과하여 지연하여 부적정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하였다.

[표]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현황

구분	검사시기	검사대상	시료 채취 후 분석 실험 실시 현황		
			40일 이내	40일 이후	경과일
계	4회	162개소	58개소	104개소	
2020	1월~6월	16개 시군 41개소	2개소	39개소	4~48
	7월~12월	16개 시군 41개소	4개소	37개소	2~33
2021	1월~6월	16개 시군 40개소	21개소	19개소	2~6
	7월~12월	16개 시군 40개소	40개소	0개소	0

자료 : 보건환경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하게 되었고, 2019년 정기종합감사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부당하게 되풀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보건환경연구원은 2021년 상반기에 시료채취 시기를 더욱 세분화하고 시험검사 필수장비를 도입완료하여 시험검사 기간 안에 시료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골프장 시료분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2021년 7월 이후에는 골프장에서 검사 시료를 채취하여 전처리 추출 과정을 거쳐 냉장 보관하는 경우에는 최대 보관기간인 40일을 준수하여 분석 실험을 완료하고 있어 시정 완료하였으나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시정완료)]**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직원 신규임용 및 임원 공개모집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순천의료원(총무과)

내 용

1. 업무 개요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 ‘순천의료원’이라 한다)은 「순천의료원 인사규정」 등에 따라 2019. 1. 1.부터 2022. 5. 31.까지 [별표] “직원 신규채용 명세”와 같이 47회에 걸쳐 127명(정규직 109명, 계약직 18명)을 신규로 채용하였고 임원(이사) 8명을 3년마다 공개하여 모집하고 있다.

2.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평가기준 미공개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Ⅲ. 직원의 인사에 따르면 기관장은 공개경쟁시험 등의 요건,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고,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는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의료원은 채용시험을 공고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평한 시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 시험과목, 배점비율 등을 채용공고에 명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순천의료원(총무과)은 [별표] “직원 신규채용 명세”와 같이 직원채용

업무를 추진하면서 채용공고문에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시험과목(평가항목), 배점비율 등 평가기준을 채용공고에 명시하지 않았고, 응시자들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채용공고에 서류 및 면접시험의 평가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료원의 채용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3. 서류전형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Ⅲ. 직원의 심사 1 신규채용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의 요건,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직종·직위·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되,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 등이 달리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며, 공고된 응시자격·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순천의료원 인사규정」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공개경쟁채용 전형은 1차 서류심사 30점과 2차 면접시험 70점으로 하며, 합격자 결정은 1차 서류심사 결과 점수와 2차 면접시험 결과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의료원은 응시자격 등을 세부적으로 인사규정에 명시하고, 응시자격 등을 포함한 심사기준과 평가방법 등을 채용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류심사 시에는 공고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대한 적격·부적격만을 판단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순천의료원(총무과)은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서류전형의 경우 적격 또는 부적격만을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의료원 인사규정」에 서류심사 30점과 2차 면접시험 70점으로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유로 규정에도 없는 채점표를 임의적으로 만들어 평정을 하였다.

또한 「순천의료원 인사규정」이나 공고에도 없는데도 서류전형이나 면접전형의 채점표에서 5명의 심사위원의 평정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의 평정점수의 평균에 5배수 하여 조정점수를 산출하는 등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1] 서류전형 심사기준 현황

	평정항목	평점기준점수					위원 평정점수
		수	우	미	양	가	
		6	5	4	3	2	
평정점	1. 채용직종의 적정자격 보유정도						
	2. 채용직종에 요구하는 충족정도						
	3. 개별능력 정도						
	4. 서면을 통한 자기표현 능력정도						
	5. 지원동기 등 기타부분 평가						
	합계	30점 만점					

자료 : 순천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3. 임원 공개모집(연임) 업무처리 부적정

순천의료원은 [표 2] “임원 공개모집 공고 현황”과 같이 2019. ○. ○○.과 2022. ○. ○○.에 임원 공개모집을 하면서 선임방법으로 서류전형을 통한 자격요건 적격심사 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위촉하는 것으로 공고하였다.

[표 2] 임원 공개모집 공고 현황

연번	공고일	직종	선발예정인원	최종선발인원
1	2019. ○. ○○.	이사	3	3
2	2022. ○. ○○.	이사	5	5

자료 : 순천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순천의료원 정관」에 따르면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도지사의 승

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에는 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Ⅱ. 임원의 인사에 따르면 임원의 연임 및 해임 기준은 직위별 직무수행 실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원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의료원은 임원의 연임채용 시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하여 직무수행 실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여 연임기준에 적합 여부 등을 평정하고, 최종 채용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순천의료원(총무과)은 2022. 5. 26. 이사 임명승인 신청[1]을 추진하면서 연임하는 이사 3명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평가도 실시하지 않았고, 신규로 채용하거나 연임하는 이사들에 대한 최종 모집결과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사람 등을 이사로 채용하고자 하는 임용 기본원칙과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업무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순천의료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은 직원 신규 채용 시 응시자격, 시험과목, 배점비율, 심사기준과 평가방법 등을 채용공고문에 공개하고,「의료원 인사규정」규정에 따라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이사 연임 시 실적평가를 실시하는 등 채용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총무과-○○○(2022.5.26.)호,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임명(이사) 임명승인 신청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훈계·시정·주의요구

제 목 개원 100주년 기념관 등 자산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순천의료원(총무과)

훈 계 대 상 자 순천의료원 총무과 ○○○○ ○○○

내 용

1. 업무 개요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 '순천의료원'이라 한다)은 「순천의료원 회계규정」 제110조 등에 따라 자산을 재고자산, 고정자산 및 부외자산으로 구분하여 매년 6월말 현재 자산상태를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다.

○○○○ ○○○은 2017. 8. 1.부터 20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자산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 불법건축물 방치로 인한 이행강제금 납부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르면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 조례로 정

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건축법」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의료원은 임시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존치기간의 연장을 하여야 하여 가설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순천의료원(총무과)은 [표 1]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물건(미등기) 현황”의 이행강제금 대상과 같이 2015. 6. 7.에 창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 ○○.○㎡를 축조하고, 사용 연장에 대한 조치없이 가설건축물을 무허가 건물로 방치하여「건축법」제80조에 1항에 따라 2019. 7. 25.에 ○○시에 19,303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등 건축물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물건(미등기) 현황

부적정 사항	건축 구분	취득 재산명	취득일자	취득사유	구조	취득가액 (천원)	비고
이행강제금 대상	가설건축물 (○○.○㎡)	창고	2015.06.07.	신축	경량철골조	-	무허가 증축
미등기 대상	건물 (○○.○㎡)	100주년 기념관	2019.10.10.	증축	경량철골조	109,255	

자료 : 순천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3. 건축물 등기 및 목적물의 방치

순천의료원은 1919년 도립 순천병원 설립 이후 지역민과 함께 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2019년에 개원 10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 10. 10.에 100주년 기념관을 [표 2] “개원 100주년 기념관 증축 사업 현황”과 같이 취득하였다.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순천의료원 회계규정」 제124조에 따르면 고정자산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자산관리담당은 소유권, 권리에 대한 등기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순천의료원(총무과)은 2019. 10. 10. 기념관 건축물을 신축하고 2019. 10. 22. 사용승인을 받았는데도 20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물건(미등기) 현황”의 미등기 대상과 같이 권리보전에 필요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어 자산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또한 [표 2] “개원 100주년 기념관 증축 사업 현황”과 같이 이행강제금 19,303천원, 용역 및 공사비 109,255천원 등 128,558천원을 투입하여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2019. 10. 14.에 100주년 기념행사를 마친 후부터 20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외부인에게 공개하거나 전시하지 않는 등 기념관의 건립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표 2] 개원 100주년 기념관 증축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업체명	사업비	완료일	비고
	계		128,558		
1	이행강제금 납부	○○○○	19,303	2019.07.25.	
2	개원 100주년 기념관 증축공사 건축설계 및 감리 용역	○○○사무소 ○○	10,000	2019.08.20.	수의계약
3	개원 100주년 기념관 증축공사	○○건설(주)	84,845	2019.11.01.	소액수의
4	개원 100주년 기념관 증축 전기공사	○○전력(주)	9,460	2019.11.01.	수의계약
5	개원 100주년 기념관 간판 등 제작	㈜○○디자인	4,950	2019.10.17.	소액수의

자료 : 순천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4. 부외자산 등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순천의료원 회계규정」 제110조와 제113조에 따르면 자산은 재고자산, 고정자산 및 부외자산으로 구분하고, 부외자산은 증여 등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사용 또는 점유하는 자산이며, 자산관리담당은 매년 6월말 현재 자산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여 8월말까지 원장에게 보고 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28조에 따르면 부외자산은 당연히 자산으로 취급되어야 하거나 자산으로 관리할 가치가 있는 자산이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해 있는 임차자산, 담보자산, 국유재산 등은 부외 자산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129조에 따르면 부외자산을 자산에 등재하는 때 등재가액은 취득가액 또는 평가액으로 하며,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해서는 적절한 평가를 하여 자산으로 등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의료원은 자산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매년 과부족 및 망실, 훼손된 자산에 대해 관리보고서를 작성하며, 특히 부외자산도 자산에 포함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순천의료원(총무과)은 2022. 7. 15. 감사일 현재 매년 6월말 현재 자

산 상태를 파악하지 않았고, 2016. 2월 기증받은 ○○○ ○○○○용 ○○펌프 등 9건의 자산에 대하여 [별표] “부외자산(기증품) 명세”와 같이 자산으로 등재하지 않은 채 적절한 재산적인 가치 평가도 없이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자산관리를 소홀히 하여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순천의료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은

① 개원 100주년 기념관 사용연장신고 미이행으로 이행강제금 19,303,000원을 납부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건축허가 이후에도 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 ○○○를 훈계하고(**훈계**)

② 개원 100주년 기념관 건축물의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고, 자산 미등재되어 있는 부외자산 9건을 자산으로 등재하여 체계적으로 자산관리를 하며(**시정**)

③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불법 건축물 방치로 인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유권 등기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 후 과부족 및 망실, 훼손된 자산에 대해 관리보고서를 작성하며, 부외자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산관리업무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기관경고·징계·훈계요구

제 목 **진료용 ○○○ 연장계약 등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순천의료원(총무과)

징 계 대 상 자 순천의료원 총무과 ○○ ○○○

훈 계 대 상 자 ① 순천의료원 총무과 ○○○○ ○○○

② 순천의료원 총무과 ○○○○급 ○○○

내 용

1. 업무 개요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 ‘순천의료원’이라 한다)은 「의료원 회계규정」 제166조에 따라 「지방계약법」, 「지방재정법」, 「전라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계약관계 조항을 준용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는 2017. 8. 1.부터 20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계약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 ○○○는 2020. 7. 1.부터 20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을 담당하고 있으며, ○○○○급 ○○○은 2020. 7. 1.부터 20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연장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순천의료원은 2019. 1. 1.부터 20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 1] “용역 연장 계약 명세” 등과 같이 ○○용역 등 5건의 용역계약, 진료용 ○○○ 공급

등 물품 14건의 물품계약에 대하여 총 63차례 연장계약을 추진하였다.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재정법」 제7조 및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Ⅱ. 출연기관 예산편성의 원칙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2]의 사유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그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 비치해 두어야 하며,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공사는 87.745%, 용역·물품은 88%(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 · 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의료원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에 따라 매년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연장계약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입찰 등을 통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 및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

2) 불가항력이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용역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순천의료원(총무과)은 [표 1] “용역 연장 계약 명세”와 같이 최초 2017. 5. 1.부터 2018. 4. 30.까지 청소용역 등 5건에 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 근로자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3]한다는 이유로 최초 계약한 계약상대자와 적게는 1차, 많게는 3차[4]에 걸쳐 총 11차례 임의로 연장계약을 추진하여 2,493백만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표 2] “진료용 ○○○ 연장 계약 명세”와 같이 최초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진료용 ○○○ 공급계약 12건을 체결한 후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적게는 1차, 많게는 5차에 걸쳐 불가항력의 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연장계약을 추진하였고, 2019년과 2020년에도 진료용 ○○○ 공급계약 2건을 체결한 후 불가항력의 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2022년까지 매년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52차례 걸쳐 연장계약을 추진하여 8,845백만원을 지출하였다.

그리고 ○○용역 등 5건의 용역 2,493백만원, 진료용 ○○○ 공급 등 14건의 물품 8,845백만원 등 총 113억 3,800만원원의 계약 체결 시 예정가격이 작성없이 임의로 계약금액을 산정하여 체결하였고, 낙찰률(88%)을 적용하지 않아 약 13억 61백만원[5]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하였다.

그로 인하여 입찰 참가자들의 경쟁원리가 무시된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한 업체에 계속적으로 특혜를 제공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아 13억 61백만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계약과정 공개 부적정

---

3)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정부 관계부처 합동 지침) / 대상 :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4) 2019년 ○차 인사위원회(2019. ○. ○○. 개최)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 6명에 대해 임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심의안건을 상정하여 결국 그에 따른 간병 용역(계약상대자 ○○○○개발) 연장

5) 실제계약금액과 낙찰률(88%) 적용 시 차액 : 1,361백만원
= 11,387백만원(실제계약금액) - 9,977백만원(낙찰률 88% 적용 금액)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계약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입찰, 계약,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의료원은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의 결과, 계약체결의 현황, 계약내용의 변경,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 등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시스템에 즉시 입력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순천의료원(총무과)은 계약 이행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시스템이 아닌 2020년까지는 수기로 작성하였고, 2021년에는 엑셀로 간단히 작성하여 담당자의 PC에 저장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도 않았다.

그로 인하여 의료원은 계약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사무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순천의료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은

① 관행적으로 연장계약을 하고, 임의로 계약금액을 산정하여 예산을 낭비하며, 계약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오니, 향후 각종 계약을 추진할 때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기관경고)**

② 위 관련자들 중 2017년부터 20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계약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 ○○○를 “경징계” 처분하며**(징계)**

③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 ○○○, ○○○ ○급 ○○○을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별표 1] 생 략

[별표 2] 생 략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재정(신원)보증보험료 납부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순천의료원(총무과)

내　　용

1. 업무 개요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 '순천의료원'이라 한다)은 「의료원 인사규정」, 「의료원 회계규정」 등에 따라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각종 계약 및 지출·수입 등의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근거)

「순천의료원 인사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직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사람은 재정보증서(2인 이상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보험 증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77조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재정보증서 또는 보험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붙임6(지출 예산과목 성질별 분류 및 과목해소)에 따르면 화재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는 경비(보험료)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순천의료원 회계규정」 제8조에 따르면 의료원의 회계관직으로 원무과장을 수입담당으로, 원장을 징수결정·지출·자산담당·계약담당으로, 총무과장을 자산출납담당·분임지출담당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의료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 직원과 회계관계직원에게 재정(신원)보증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순천의료원(총무과)은 매년 최초 임용 직원이나 회계관계직원이 아닌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적게는 208명, 많게는 251명에 대하여 재정(신원)보증서를 부당 징구하였다.

또한 [표] “보험료(공제료) 납부 현황”과 같이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보험에 한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그 외 다른 직원들에 대한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직원들의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법으로 개인에게 전가시켰다.

[표] 보험료(공제료) 납부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대상자	연도	대상인원	금액	비고
재정보증보험	회계관계직원	소계		1,198	세출예산 지급
		2019	56	452	
		2020	51	363	
		2021	58	383	
신원보증보험	모든 직원	소계		3,726	개인 지급
		2019	208	1,281	
		2020	251	1,265	
		2021	250	1,180	

자료 : 순천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불필요한 재정보증서 비용을 소속 직원으로부터 징구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직원에게 총 3,726천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순천의료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은 앞으로 매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근거없이 징구하고 있는 재정(신원)보증보험 증권을「순천의료원 인사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 직원과 회계관계 직원에게만 대상으로 징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의료기기 구매 할인 규정 미적용

관계기관(부서) 순천의료원(총무과)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 “순천의료원”이라 한다)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환자 진료에 필요한 ○○○○○○ 등 의료기기 24종의 의료기기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구매대금으로 총 1,189백만원을 집행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의료법」 제23조의5 제2항에 따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기 위하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별표 2의3]에 따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비용 할인[1]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의료원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구매하려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허용하고 있는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적용을 검토하여 의료기기 구매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 거래금액의 0.6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2)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 거래금액의 1.2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3)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 거래금액의 1.8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4) “거래가 있은 날”이란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도착한 날을 말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순천의료원(총무과)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표] “의료기기 구매 시 대금결제 조건 비용할인 미적용 현황”, [별표] “의료기기 구매 시 대금결제 조건 비용할인 미적용 세부 명세”와 같이 ○○○○○○ 등 24종, 총 1,188,915천원의 의료기기를 구매하면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허용하고 있는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의료기기 구매 입찰공고문에 이를 명시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여 비용할인을 받지 못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의료기기 구매 시 대금결제 조건 비용할인 미적용 현황

(단위 : 천원)

구입내역	계약금액(천원)	납품완료 후 대금 결제일	할인율 (%)	할인율 적용 시 예산절감액 (천원)
24종	**1,188,915**			**20,838**
○○○○○○ 등 21종	1,095,215	1개월 이내	1.8	19,714
○○○○○○ 등 3종	93,700	2개월 이내	1.2	1,124

자료 : 순천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의료기기 전체 구매비용 1,188,915천원을 2개월 이내에 결제하고도 20,838천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관계기관 의견 순천의료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은 앞으로 의료기기 등을 구매할 경우 입찰공고문에 대금결제 조건을 명시하여 비용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주의요구·통보

제　　목　입원 및 외래환자 진료비 미수금 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순천의료원(원무과)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 “순천의료원”이라 한다)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수가 등 제 사용 요금에 대하여 수납·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순천의료원 의료수가관리규정」 제2조 및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수가 및 제 사용 요금(이하 “제 요금” 이라 한다)이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외한 비급여 진료항목, 건강진단비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으로 발생하는 제반 수가를 말하고, 제 요금의 징수는 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징수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 기준으로 중도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순천의료원 회계규정」 제90조, 제91조, 제92조에 따르면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입의무자에 대하여는 납입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납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납입의 가망이 없거나 납입을 태만히 한 사람에 대하여는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 제소 등의 절차를 취하며, 소멸 시효[1]의 완성(소멸시효 3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 결정액에 대한 미수금을 결손처리 하고자 할 때에

1) 「민법」 제163조 제2항에 따른 의사, 조산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

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의료원은「순천의료원 회계규정」에 따라 납입기한이 경과한 제요금의 징수를 위하여 납입기한 경과 7일 이내 독촉장을 발행해야 하고,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제소 등의 절차를 거쳐 소멸 시효 3년이 경과한 소액 및 납입 가망이 없는 진료비 미수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결손처리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순천의료원(원무과)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표] “진료비 미수금 처리현황”과 같이 입원 및 외래환자의 진료비 미수납 181건 중 83건을 제외한 98건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행하지 않았고, 체납자의 재산상황 조사 및 제소 등의 절차를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표] 진료비 미수금 처리현황(2017년1월~2022년6월)

(단위 : 천원)

연도별	진료비 미수금 발생현황		독촉장 발행건수	재산상황 등 조사여부	소멸시효 경과 미수금 결손처리 현황		
	건수	미수 금액			대상건수	결손처리여부	결손처리 가능금액
계	181	31,610	83		129		19,931
2017년	60	10,703	31	×	60	×	10,703
2018년	46	7,026	18	×	46	×	7,026
2019년	34	3,785	24	×	23	×	2,202
2020년	18	3,548	4	×		시기 미도래	시기 미도래
2021년	12	4,396	4	×		〃	〃
2022. 6월	11	2,152	2	×		〃	〃

자료 : 순천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2017년 1월부터 2019년까지 소멸 시효 3년이 경과하여 소멸 시효가 완성된 진료비 미수금 83건, 19,931천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결손처리할 시 진료비 미수금 관리를 위한 행정력의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도, 체납자의 재산상황 조사 및 제소 등의 절차를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은 채 결손처리는 하지 않는 등 진료비 미수금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진료비 미수금 31,610천원을 적시에 징수하지 못하여 의료원의

재정적 손실 및 소멸 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리 등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순천의료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은

① 소멸시효가 완성된 소액 및 납입 가망이 없는 진료비 미수금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 등을 통하여 결손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통보)**

② 앞으로 진료비 미수금에 대하여 「순천의료원 회계규정」에서 정한 독촉장 발행, 체납자 재산상황 조사를 통한 제소 등의 절차를 준수하는 등 진료비 미수금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 라 남 도

개선·주의요구

제 목 임직원 보수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순천의료원(총무과)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 “순천의료원”이라 한다)은 2019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순천의료원 보수규정」, 「순천의료원 연봉제규정」에 따라 의료원 임직원에게 보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 위험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순천의료원 보수규정」 제28조 〔별표 7〕 수당 등 지급기준표 13. 위험수당은 지급기준을 갑종 6만원, 을종 5만원으로 되어 있고, 갑종은 의료·감염·방역·보건 부문(의사, 약사, 간호사, 보건직 종사자)이며, 을종은 기타 부문(사무직, 기술직, 기능직 종사자)로 되어 있다.

또한 「순천의료원 보수규정」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순천의료원의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40조에 따르면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표 1]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 및 등급별 구분표”과 같이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 및 등급별 구분표

부문	등급	등급별 구분표
2. 방역·보건 및 수의 부문	을종 (월 5만원)	가. 방역·보건관계 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치료·촬영·연구·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나. 결핵·한센병·감염병 또는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수술·치료·검사·간호·물리치료·작업치료·이동치료 또는 특수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방역연구기관에서 감염병관계 예방약의 생산·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라. 사람과 짐승 공통의 감염병(전염병)·세균 및 병독을 취급하는 사람
	병종 (월 4만원)	가. 결핵·한센병·감염병 및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나. 감염병 연구·시험기관에서 감염병이나 그 밖의 질환에 관하여 직접 취급은 하지 않지만 상시 접촉하여 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9. 각 부분	을종 (월 5만원)	가. 폭발물 안전관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 나.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이용하여 연구·실험 및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 급식실에서 조리기구(취사기, 야채절단기, 튀김솥 등)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라. 도로현장에서 도로 보수·정비, 작업차량 운전, 교량·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병종 (월 4만원)	가. 보일러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 종사자 나. 저압동력, 그 밖에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발전사·전기수리공 다. 구급차의 운전원 라. 유독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현상 업무나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사진촬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마.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측정을 위하여 굴뚝에 올라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바. 이륜차를 상시 운행하며 산림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산림보호직공무원 사.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 동물원에서 야생동물 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자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관련 위험근무수당 발췌

또한「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Ⅴ. 특수근무수당 1. 위험근무수당 편에 따르면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있는 기관에서는 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① 직무의 위험성, ② 상시 종사 여부, ③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일시적·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으며, 해당 기관 혹은 부서 내에서도 업무 분장 상에 있는 위험한 작업 환경과 장소에 직접 노출되어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의료원은 위험수당을 지급할 경우 직무의 위험성, 상시 종사 여

부, 직접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순천의료원(총무과)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위험수당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표 2] “의료원 위험수당 지급기준 현황”과 같이 위의 제반 규정 등을 무시한 채 「순천의료원 보수규정」을 부적정하게 개정하여 적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표 2] 의료원 위험수당 지급기준 현황

구분	갑종	을종
지급액 (천원)	50	40
지급대상	○ 의료·감염·방역·보건분야 - 의사, 약사, 간호사, 보건직 종사자 - 기타부문 종사자	○ 기타부문 - 사무직, 기술직, 기능직 종사자

자료 : 순천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감사 기간 중 2019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위험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순천의료원 임직원 302명을 대상으로 위험수당 지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별표 1] “위험수당 부당지급 명세”와 같이 위험한 업무에 상시·직접 종사하지 않고 있는 계약, 지출, 예산, 교육, 장례지도, 전산, 야간경비 업무 담당자 ○○○ 등 임직원 49명에게 78,060천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3. 의사직 등 연봉제 임직원 명절휴가비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순천의료원 연봉제규정」 제3조에 따르면 연봉이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원장 및 의사의 연봉계약 기간 동안 받는 임금 총액으로 기본연봉, 성과상여금,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이고, 부가급여란 속인적 성격의 급여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연차수당, 휴일수당,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일·숙직 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효도휴가비), 벽지수당 등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의료원은 원장 및 의사의 연봉계약 시 기본연봉, 성과상여금, 부가급여에 포함된 연봉 항목이 이중으로 책정되지 않도록 연봉액 산정 등 연봉계

약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순천의료원(총무과)은 2010년에 임상과장 등 의사직 임직원과 연봉 협상 과정에서 연봉인상 요구가 있자 최소의 소요재원으로 의료진의 진료의욕 고취한다는 사유로 2010. 9. 15. “○○과장(계약직) 명절휴가비 별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원장의 결재를 받아 연봉계약 시 체결한 연봉에 이미 명절휴가비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별표 2] “연봉제 임직원 명절휴가비 지급 명세”와 같이 2010년 6월부터 20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총 156명에 272,132천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순천의료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은

① 임직원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 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순천의료원 보수규정」 제28조를 개정하도록 하시고,**(제도상 개선)**

② 앞으로 의사직 등 연봉제 임직원과 연봉계약 시 연봉에 이미 포함된 명절휴가비가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순천의료원 연봉제규정」 준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생 략

[별표 2] 생 략

전 라 남 도
기관경고·주의요구

제 목 진료성과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순천의료원(총무과)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 “순천의료원”이라 한다)은 「순천의료원 연봉제 규정」 및 「순천의료원 진료성과평가기준」에 따라 진료성과평가[1]를 통하여 매월 일반의 이상 계약직 의사에게 초과진료성과급[2]을 지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순천의료원 연봉제규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진료성과급은 의사 개인의 진료성과에 따라 지급하며 원장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도지사와 협의 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순천의료원 진료성과평가기준」 제5항 제1항에 따르면 초과진료성과급은 초과진료성과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분기, 연도) 단위로 산출하고 월(분기, 연도)말 다음 달에 지급하며 같은 기준 제6조에 따르면 초과진료성과급의 지급한도는 총의업수입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9조에 따르면 진료과별·의사별 진료비 원가산출배분 기준에 따라 의업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진료성과에 대한 평가

---

1) “진료성과평가”란 진료를 담당하는 일반의 이상 계약직 의사의 진료성과급 지급을 위하여 환자 진료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진료성과에 대한 평가

2) “초과진료성과”는 해당 진료과의 기본진료 성과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초과진료성과급”은 초과진료성과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임

를 실시하고, [별표 1] 원가 산출배분 기준에 따르면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에 해당되어 [표 1] “원가 산출배분 기준 현황”과 같고, [별표 3] 초과진료성과급 배분기준에 따르면 월별 전진료과의 수지가 흑자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진료과의 기본진료성과(수익목표액)를 초과하는 해당액의 10%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원가 산출배분 기준 현황

구분	원가 산출배분 기준
인건비	- 의료진 인건비 진료재료비 등 진료에 직접 투입되는 항목은 각 진료과에 배분 -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중앙공급실, 마취통증의학과, 물리치료실, 의무기록실, 총무과, 원무과, 간호과, 진료에 따른 보조업무종사자 인건비는 진료과에 배분 - 진료과 인건비는 기존 의료진의 급여을 연장해서 적용하고 현임 원장은 전임 원장 인건비를 준용하여 관리과 인건비에 배분 - 인건비 중 반납한 급여(상여금, 기본금, 시간외수당, 월차수당)는 지출한 것으로 원가에 합산
관리비	- 경상비 : 의료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소모적 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여비, 전력료, 보험료,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기타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 건물유지비 : 병원 건물 유지를 위한 경비 수선비, 도색비, 공제회비 등 - 차량유지비 : 차량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 보험료, 유류대, 수리비 등 - 자산취득비 : 의료장비를 제외한 자본적 성격의 취득비 - 의료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상적 관리비 건물 차량유지비 등은 진료과에 배분
재료비	- 약품비 : 환자진료를 위해 구입된 의약품 구입비 - 진료재료비 : 환자진료를 위해 필요한 재료 구입비 - 급식재료비 : 환자 및 가족 급식을 위해 투입된 비용 - 기타 : 혈액구입비, 의료소모품비

자료 : 순천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의료원장과 의사간에 체결한 「근로(연봉)계약서」 제5조 제5호에 따르면 초과진료성과급을 총 의업수입(행위료)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월별 성과목표액은 50백만원 내지 150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의료원장은 진료비 원가산출배분 기준에 따라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등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진료성과를 평가하여야 하고, 초과진료성과급을 지급할 경우에는 월별 전진료과의 수지가 흑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원가산출배분 기준에 따라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초과진료성과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순천의료원(총무과)은 진료성과는 진료과별·의사별 진료비 원가산출배분 기준에 따라 의업수익에서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을 비용으로 산출하여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2019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원가산출배분 기준을 따르지 않고 인건비 등을 누락한 채 재료비만을 비용으로 산출하여 의업수익에서 차감하여 진료성과가 과다하게 평가되도록 하여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또한 순천의료원의 재정자립도[3]가 2019년 90.39%, 2020년 71%, 2021년 81.73%로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병원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순천의료원의 운영을 위하여 의사들에게 진료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사유로 2019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별표] “순천의료원 초과진료성과급 지급내역 명세”와 같이 2019년에는 9명에게 000,000천원을, 2020년에는 10명에게 000,000천원을, 2021년에는 8명에게 000,000천원, 2022년 5월까지 7명에게 000,000천원을 지급하여 0,000,000천원의 초과진료성과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그로 인하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진료성과평가를 하여 의료원의 건전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순천의료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은

① 「순천의료원 진료성과평가기준」에 따라 진료 평가시 원가산출 배분기준에 따라 수익에서 인건비·관리비·재료비 등의 비용을 차감하고, 초과진료성과급은 월별 전진료과의 수지가 흑자가 발생할 경우에만 지급하시고,**(기관경고)**

3) 재정자립도 = 의료수입/의료비용

② 앞으로 「순천의료원 진료성과평가기준」에 따라 진료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초과진료성과급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주의요구·통보

제　　목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임직원 소개 감면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순천의료원(장례사업팀)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 “순천의료원”이라 한다)은 건전한 장례 문화를 정착하고 사용자 편의 및 고품질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례식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순천의료원 장례식장운영관리규정」 제9조에 따르면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례식장 운영관리 세부지침의 장례식장 시설사용 감면신청서를 작성하고 감면기준은 「순천의료원 장례식장 운영관리 세부지침」에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순천의료원 장례식장운영관리규정 세부지침」 제13조에 무연고 사체, 생활보호대상자,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 12. 17.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의 투명성·공공성 제고 방안」을 통해 부정청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국공립병원의 임직원 소개 및 지인 감면제를 2019년 6월까지 폐지하도록 제도개선 권고하였다.

한편 「순천의료원 장례식장운영관리규정 세부지침」 제4조 내지 제7조에 따르

면 장례식장 수가 책정 및 장례식장 운영 활성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반 사항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되는 장례식장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의료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을 권고받은 사항인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임직원 소개 감면 제도를 폐지에 대하여 자체 규정에 반영 여부 검토 등 규정 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치기한 내 정비될 수 있도록 검토한 후 조치하여야 하고, 장례식장 수가 책정 등 제반사항은 장례식장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순천의료원(장례사업팀)은 장례식장 이용자 유치 및 지역사회의 장례식장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2018. 12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국공립병원의 임직원 소개 및 지인 감면제 폐지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권고받고도 20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 규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임직원 소개 장례식장 시설사용료를 감면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감사 기간 중 2019년 1월부터 2022. 6. 30.까지 장례식장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 1] “장례식장 운영 현황” 및 [표 2] “장례식장 감면 현황”과 같이 장례식장을 이용한 2,051건의 45.9%에 해당되는 942건이 시설사용료 감면을 받았다.

특히 임직원 소개로 장례식장 감면은 시설사용료 감면을 받은 942건 중 518건으로 55%를 차지하고, 그 중 장례업무와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장례지도사 소개로 인한 감면은 232건으로 44.8%를 차지하고 있어 부정청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표 1] 장례식장 운영 현황(2019. 1월~2022. 6월)

(단위:건, 원, %)

장례식장 운영 현황		장례식장 감면 현황		감면비율
건수	매출총액	건수	총 감면금액	
2,051	7,615,066,600	942	346,596,320	45.9

자료 : 순천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장례식장 감면 현황

(단위: 건, %, 원)

감면유형	건수	비율	감면금액	비고
	942	100	346,596,320	
기초생활수급자	155	16.50	40,076,040	
입원환자	123	13.10	45,169,650	
임직원소개	518	55.00	199,634,100	일반직원 286건(55.2%) 장례지도사 232건(44.8%)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5.18 등	96	10.20	35,712,510	
협약체결 유관기관	26	2.80	9,730,920	
직원가족(직계)	22	2.30	15,216,800	
코로나19(특별감면 50)	2	0.20	1,056,300	

자료 : 순천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19년 1월부터 20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장례식장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표 3] “장례식장 감면 협약 현황”과 같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지부 등 5개 단체와 장례식장 감면 협약을 체결하여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30%를 감면하고 있어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표 3] 장례식장 감면 협약 현황

(단위:원, %)

협약기관명	협약기간	감면범위	제출서류	할인율	비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부	2018.12.01.~2020.11.30.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자녀	조합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30	
순천시 ○○공원 매점	2019.01.02.~2020.01.01.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0	의료원에서 유골함 각인 시 위패 무상 서비스
순천○○ 조합원 및 임직원(가족)	2019.01.30.~2021.01.29.		조합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30	
전라남도순천○○○○청	2019.07.01.~2021.06.30.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0	
○○○○ 노동조합	2020.06.01.~2022.05.31.		조합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30	

자료 : 순천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임직원 소개 감면제도 운영으로 부정 청탁 유발 소지가 높아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의료원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순천의료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은

①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임직원 및 지인 소개 감면 폐지와 관련된 제도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자체 규정 등을 정비하고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임직원 소개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며,**(통보)**

② 앞으로 「순천의료원 장례식장운영관리규정」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장례식장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장례식장 수가가 책정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 라 남 도

훈계·시정요구·통보

제 목 **순천의료원 관사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순천의료원(총무과)

훈 계 대 상 자 ① 순천의료원 총무과 ○○○ ○급 ○○○

② 순천의료원 종합검진센터 ○○직 ○○○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 “순천의료원”이라 한다)은 일반직원 및 의사 등 주거안정과 근무 편의를 위하여 「순천의료원 관사관리규정」에 따라 총 21세대의 관사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총무과 ○○○ ○급 ○○○은 2019. 1. 1.부터 20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의료원 관사 보증금 업무 담당자로, 종합검진센터 ○○직 ○○○는 2010. 1. 1.부터 20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의료원 관사 거주에 따른 전세보증금 지원을 받고 있다.

2. 순천의료원 관사 부당 임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이라 한다) 제2조에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지역주민 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 지

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순천의료원 정관」제4조에 순천의료원은「지방의료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의료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장례사업 및 음식업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순천의료원 관사관리규정」제2조에 원장, 진료부장, 관리부장, 진료과장, 일반의 이상 의사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한 연립주택 및 아파트와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전세주택을 "관사"로 규정하고 있고, 관사 사용 시에는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원장이 사용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은「지방의료원법」및「의료원 정관」에서 정한 사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고 관사가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사를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관사 운용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4. 8. 15.부터 의료원 소유 관사인 ○○시 ○○동 ○○○○아파트 ○○○동 ○○○○호(84.87㎡)를 의료원 임직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전세금 65,000,000원에 임대하여 20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약 8년 동안 전세금 변동도 없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도 갱신하지 않는 등 [표] "의료원 소유 관사 부당 전세임대 현황"과 같이 관사가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사 관리를 방치하고 있었다.

[표] 의료원 소유 관사 부당 전세임대 현황

(단위:원)

대 상	임대기간	전세금	비 고
○○시 ○○동 ○○○○아파트 ○○○동 ○○○○호(84.87㎡)	2014.08.15.~ 2016.08.14. (2년)	65,000,000	
	2016.08.15.~ 2018.08.14. (2년)	65,000,000	갱신계약서 미작성
	2018.08.15.~ 2020.08.14. (2년)	65,000,000	갱신계약서 미작성
	2020.08.15.~ 2022.08.14. (2년)	65,000,000	갱신계약서 미작성

자료 : 순천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같이 의료원 소유 관사를 일반인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해당 관사를 임직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전세 임대하여 관사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관사를 운용하고 있었다.

3. 관사 전세보증금 지원 및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순천의료원 관사관리규정」 제2조에 원장, 진료부장, 관리부장, 진료과장, 일반의 이상 의사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한 연립주택 및 아파트와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전세주택을 “관사”로 규정하고 있고, 관사 사용 시에는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원장이 사용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순천의료원은 「의료원 관사 관리규정」에 의료원이 소유한 연립주택 및 아파트와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전세주택을 관사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순천의료원 ○○○○과 의사 ○○○가 직접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30천만원 전세보증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원(총무과)은 「의료원 관사관리규정」에 따라 관사는 의료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연립주택, 아파트 또는 전세주택으로 되어 있어 의사 등이 직접 임차하는 거주지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는데도, 2010년부터 20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의사 ○○○에게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

특히 종합감사 기간(2022. 7. 11.~7. 15.) 중 순천의료원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은 의사 ○○○의 거주지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12. 11. 23. 해당 거주지를 매입하고 약 5년 뒤인 2018. 1. 28. ○○시 소재 다른 아파트(○○○○ 아파트)를 매입 후 이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2. 11월에 해당 거주지에 대한 주택자금 명목으로 사용되었는데도 20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등 관사 관리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순천의료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은

① 전세보증금 관리 업무를 태만히 한 담당자 ○○○와, 해당 관사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데도 거주에 따른 전세보증금을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고 부당하게 지원받은 ○○○를 “훈계”하고**(훈계)**

② 관사 전세보증금 지원 근거 없이 부당하게 지원한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시정)**

③ 의료원 소유 관사를 부당하게 일반인에게 임대하지 않고 해당 관사를 관사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전 라 남 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지식재산권 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경영기획실)

훈 계 대 상 자 녹색에너지연구원 경영기획실 ○○(○급) ○○○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녹색에너지연구원” 이라 한다)은 2011. 6. 30.부터 20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과 같이 44건의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있다.

[표 1]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구 분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비 고
	건 수	금 액	
특허, 상표	44	미산출	

자료 : 녹색에너지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급) ○○○은 2021. 3. 1.부터 20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경영기획실에서 지식재산권 관리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녹색에너지연구원 직무발명보상규정」 제6조에 따르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원 부서장, 특허업무 관련 전문가, 직무발명 심의와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5~7인 이하로 원장이 위촉하고, 해당 발명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며, 위원회에서는 접수된 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 해당 여부·승계 여부·국내외 출원 여부, 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접수된 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 해당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원장이 연구원 부서장, 특허업무 관련 전문가, 직무발명 심의와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5~7인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녹색에너지연구원(경영기획실)은 2015. 12. 17.부터 2021. 7. 2.까지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9차례[1] 개최하면서 위원은 연구원 부서장, 특허업무 관련 전문가, 직무발명 심의와 관련하여 5~7인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데도 20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9차례 위원회를 개최 시마다 내부결재로 위원들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3차례(2015. 12. 17., 2017. 12. 4., 2021. 7. 2.)는 원장이 위원장이 아닌 ○○○○실장, ○○○○○○○○○실 수석연구원, ○○○○○○○장을 위원장으로 정하여 위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

그리고 접수된 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 해당 여부·승계 여부·국내외 출원 여부, 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44건의 특허·상표 중 2건의 특허[2]에 대하여만 직무발명 해당 여부·승계 여부·국내외 출원 여부 등을 심의하였고, 5건은 특허 출원한 이후 직무발명 해당 여부·승계 여부·국내외 출원 여부 등을 심의하였으며, 10건은 직무발명 해당 여부·승계 여부·국

1) 개최일 : 2015.12.17., 2016.12. 1, 2017. 2.17, 2017. 7.17, 2017.12. 4, 2018. 1.25, 2018.12.11, 2019.11.28., 2021. 7. 2.

2) 산업단지 ○○○○ 그리드 시스템, ○○○ 기능을 가지는 건물 외벽시스템

내외 출원 여부 등을 심의 없이 연차 등록갱신이 도래한 특허의 계속 유지 결정 및 연차 등록 갱신을 심의하였고, 27건은 직무발명 해당 여부·승계 여부·국내외 출원 여부, 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위원회 심의 없이 특허·상표 출원 및 등록 완료 및 등록을 진행하고 있어 총 42건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3. 임직원 직무발명 미신고 및 권리승계 등 사후 미조치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녹색에너지연구원 직무발명보상규정」 제6조에 따르면 직원이 직무발명[3]을 한 경우에는 직무발명신고서, 발명의 내용 설명서를 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3조, 제7조에 따르면 연구원은 직무발명을 한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하고, 직원 이외의 사람과 공동으로 이루어진 직무발명의 경우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하며, 원장은 직무발명의 승계 여부를 승인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8조, 제9조에 따르면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연구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연구원에 양도증서에 의해 양도하여야 하고, 원장은 양도증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연구원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며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연구원은 특허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용으로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명자에게 발생수입의 4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직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양도증서에 따라 특허 권리를 승계받아 연구원 명의로 특허출원하여야 하고, 해당 특허의 양

3)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연구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임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함

도, 전용실시권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해당 직원에게 40퍼센트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녹색에너지연구원(경영기획실)은 소속 직원들이 직무발명한 상표 44건에 대하여 직무발명신고서, 발명의 내용 설명서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원장이 직무발명의 승계 여부를 승인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20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특허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용으로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명자에게 발생수입의 4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표 2]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현황”과 같이 산업단지 ○○○○ 그리드 시스템건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통상실시권(노하우 이전)의 허용으로 2건의 특허에 대한 기술이전료 수입이 38,500천원이 발생한 건에 대하여 20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발명자 10인[4]에게 발생수입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표 2]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권리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이전 대상	이전금액 (기술료)	계약기간	비고
계		2건			38,500		
1	특허	10-2016-0000000 (2016.12.21.)	산업단지 ○○○○ 그리드 시스템	(주)○○○○	33,000	2019.05.13. ~2021.03.31.	통상실시권 (노하우 이전)
2	특허	10-2016-0000000 (2016.12.21.)	산업단지 ○○○○ 그리드 시스템	(주)○○○	5,500	2019.05.13. ~2021.03.31.	통상실시권 (노하우 이전)

자료 : 녹색에너지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연구원의 지식관리권 관리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하지 못해 연구의욕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4) 발명자 10인 : ○○○, ○○○, ○○○, ○○○, ○○○, ○○○, ○○○, ○○○, ○○○, ○○○,

관계기관 의견 녹색에너지연구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① 지식재산권 관리를 부적정하게 관리한 업무 담당자 ○○ ○○○을 훈계하고 **(훈계)**

② 「녹색에너지연구원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임직원 직무발명 신고 및 권리승계업무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보조금 정산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경영기획실, 풍력해양연구실, 상용화사업실, 에너지신산업연구실, 일자리지원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녹색에너지연구원”이라 한다)은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표 1] “보조사업 현황”과 같이 약 887억원을 투입하여 159건의 보조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다.

[표 1] 보조사업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보조사업[1]	159	49	65	45
예 산 액	88,695,850	16,157,275	30,016,156	42,522,419

자료 : 녹색에너지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제28조,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을 기재한 실적보고(정산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 및 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정산 절차를 거쳐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라남도 등의 기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이며, 별도의 정산 요구가 없는 연구용역 및 발전수익사업은 제외

또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과「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4조 및「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시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16조, 제20조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각 단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문기관[2]의 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정산결과에 따른 정산금을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예산을 받고 전라남도로부터 출연금 및 기타 수탁사업비를 교부받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정산 절차를 거쳐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기관[3]에 반환을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녹색에너지연구원(경영기획실 등 5개 부서)은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 총 159건 사업에 대하여 [표 2] “보조사업비 미반납 현황”과 [별표]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및 미반납액 세부 현황”과 같이 정보통신 ○○○○ 3차 사업의 집행잔액 18,688천원 등 5건에 대하여 반환금 806,283천원이 발생하였는데도 20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관리기관에 반환하지 않고 있다.

[표 2] 보조사업비 미반납 현황(2019.1월~2021.12월)

(단위 : 건, 천원)

연도	보조사업	예산 및 집행현황			반납액(건수)	반납 중(건수)	미반납액(건수)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159	88,695,850	78,701,049	9,994,801	1,392,269(111)	7,796,249(43)	806,283(5)
2019	49	16,157,274	14,091,544	2,065,729	534,317(44)	1,531,411(5)	-
2020	65	30,016,157	28,441,239	1,574,919	603,260(51)	952,971(13)	18,688(1)
2021	45	42,522,419	36,168,266	6,354,153	254,692(16)	5,311,867(25)	787,595(4)

자료 : 녹색에너지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함

3) 중앙관서의 장이나 도지사 등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

그 결과 보조사업 회계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연구원의 신뢰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녹색에너지연구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관리기관에 보조사업 미반환금 806,283,000원을 조속히 반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시정요구·통보

제 목 공사감독관 업무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일자리지원센터, 에너지신산업연구실, 상용화사업실, 태양에너지연구실, 경영기획실, 기업지원실, 풍력·해양연구실)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녹색에너지연구원”이라 한다)은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 총 20건의 공사를 추진 중이거나 완료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직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2-다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이란 제5절 4-다에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으로 되어 있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직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하며,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계약담당자 또는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계약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절 및 국토교통부의「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24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녹색에너지연구원은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감독하거나 연구원에서 임명한 기술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감독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직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 또는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녹색에너지연구원(일자리지원센터 등 8개 부서)은 [별표] “공사감독관(자) 및 준공검사자 위임(선임) 현황”과 같이 12건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를 기술직원으로 위임(선임)하여야 하는데도 공문으로 공사감독자에 대한 아무런 위임(선임) 없이 사업부서의 공사발주 기안문서 상신자를 공사감독자로 하여 기술직원이 아닌 연구원 등을 공사감독자로 감독하게 하였다

또한 11건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문으로 준공검사자에 대한 아무런 위임 없

이 준공검사자 또한 사업부서의 공사발주 기안문서 상신자로 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는 소속 직원인 연구원 등을 11건의 검사자로 하여 준공검사를 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2022. 7. 15. 감사일 현재 시행했던 농공산단 ○○○○ 그리드 설비 조경공사(○○산단 ○○ 3차) 등 설계도서 및 사진을 살펴본 결과 4개 현장에서 시공내용 변경, 미시공 등 사항에 대하여 6,600천원의 설계변경 감액 조치없이 준공함으로써 공사 시설물이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품질을 확보할 수 없고 건설공사 업무 신뢰도의 훼손을 초래하였다.

[표] 연구원 완료 공사 중 시공 부분 변경 등에 대한 정산 미실시 현황

연번	공사명	공사비(천 원)	공사기간	계약상대자(대표)	지적사항	감액미조치(천원)
계	4건	428,215				**6,600**
1	농공산단 ○○○○ 그리드 설비 조경공사 (○○산단 ○○ 3차)	14,994	2019.03.22. ~ 2019.03.29.	○○건설(주) (○○○)	(설계) 207㎡ 인조화강블록포장 시 플레이트콤팩터(1.5Ton) 다짐 (시공) 인조화강블록 포장 시 플레이트콤팩터(1.5Ton) 다짐 미실시	250
2	태양광발전 실증단지 ○○사이트 구축공사(긴급)	219,671	2019.02.11. ~ 2019.04.11.	㈜○○○에너지 (○○○)	(설계) 송, 수전공사 시 58㎡ 합판 거푸집(4회) 설치 (시공) 유로폼 58㎡ 설치	2,306
3	태양광발전 ○○○○ 모니터링 시설 구축	74,513	2020.08.22. ~ 2020.10.05.	㈜○○○○○ (ㅇㅇㅇ)	(설계) 구조물 공사 장비비(크레인 및 랜탈) (시공) 크레인 시공 사진 없음	2,735
4	○○시 ○○ 하수처리 시설 내 지정수목 이식, 벌목 및 식재공사	119,037	2020.05.25. ~ 2020.10.24.	○○건설산업㈜ (○○○)	(설계) ① 소나무 등 41주 이식 시 유기질비료 1,220㎏ 사용 ② 9,600㎡ 초류종자살포 시 복합비료 960㎏ 사용 (시공) 유기질비료, 복합비료 미사용	1,309

자료 : 녹색에너지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녹색에너지연구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내용 변경 및 미시공 등으로 설계변경 감액을 조치하지 않은 6,600,000원을 회수하고**(시정)**

② 앞으로 건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기술직원 등을 감독자로 위임(선임)하여 적절하게 계약이 이행되도록 하고 합리적인 기술직원 채용 방안을 강구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주의요구·통보

제 목 일상감사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감사실, 에너지신산업연구실, 풍력해양연구실, 상용화사업실, 경영기획실, 태양에너지연구실, 연구개발본부)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녹색에너지연구원”이라 한다)은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 일상감사[1] 대상인 일정 금액[2] 이상의 물품, 용역 및 공사에 대하여 [표 1] “일상감사 실시 현황”과 같이 총 359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였다.

[표 1] 일상감사 실시 현황(2019.1월~2021.12월)

(단위 : 건)

연 도	계	물 품	용 역	공 사
계	359	125	182	52
2019년	125	64	47	14
2020년	64	22	28	14
2021년	170	39	107	24

자료 : 녹색에너지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 [표 2] “일상감사 실시 용역 중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과 같이 총 182건의 용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16건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였다.

---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함

2) 5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1,000만원 이상의 용역·공사

[표 2] 일상감사 실시 용역 중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 도	일상감사 실시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명세				비 고
		실시	예정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계	182	**16**	6,350,503	5,486,260	94.8	평균 낙찰률
2019년	47	**3**	346,000	339,930	97.4	
2020년	28	**5**	1,140,128	1,045,000	93.5	
2021년	107	**8**	4,864,375	4,101,330	93.4	

자료 : 녹색에너지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1. 일상감사 검토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녹색에너지연구원 재무회계규정」 제53조에 따르면 입찰방법 및 그 밖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절 1-가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를 작성한 후 계약부서를 경유하여 일상감사부서에 협상에 의한 계약 타당성을 검토받아 입찰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녹색에너지연구원 자체감사규칙」 (이하 “자체감사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집행부서는 일상감사 대상에 대하여 원장 또는 전결권자의 결재 전 감사실장의 협조를 받아야 하고, 일상감사 의뢰는 해당 업무의 개요, 관련 법규, 집행부서 의견을 포함하여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실장은 접수된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합규성·합목적성·능률성 및 관련 업무와의 관계 등을 검토하고 사업부서의 의견이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내용을 수정하거나 시정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일상감사 시 명백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위의 취소 및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자체감사규칙」에 따라 적절한 계약방법 선정

등 일상감사 대상에 대한 적법성·타당성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녹색에너지연구원(감사실)은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 총 359건(물품 125, 용역 182, 공사 52)의 계약에 대한 일상감사를 시행하면서 단 한건의 사업도 별다른 의견 제시 없이 일상감사 의뢰 공문에 협조를 하였고, 그 중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된 총 16건의 용역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주요 사업의 계약 체결에 따른 예산절감 기회를 상실하였고,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일상감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일상감사 미실시 및 계약 체결 후 일상감사 실시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자체감사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집행부서는 일상감사 대상에 대하여 원장 또는 전결권자의 결재 전 감사실장의 협조를 받아야 하고, 일상감사 의뢰는 해당 업무의 개요, 관련법규, 집행부서 의견을 포함하여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실장은 접수된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합법성·합목적성·능률성 및 관련 업무와의 관계 등을 검토하고 사업부서의 의견이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내용을 수정하거나 시정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일상감사 시 명백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위의 취소 및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일상감사 대상인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 용역 및 공사에 대하여 사전에 그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의뢰하여 감사실장의 협조를 받아야 하고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녹색에너지연구원(에너지신산업연구실 등 6개 부서)은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 [표 3] “일상감사 미실시 용역·물품구매 현황”과 같이 ○○○○ 계통 연계 영향도 평가 분석 용역 등 8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감사실장의 협조도 누락하였다.

[표 3] 일상감사 미실시 용역 ·물품구매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비(천원)	계약일	비 고
계	8건	636,678		
1	○○○○ 계통 연계 영향도 평가 분석 용역	20,000	2020.09.14.	감사실장 협조 누락
2	○○○ 50kw급 융복합 ○○○○시스템 제작 부품구매	8,330	2020.09.24.	〃
3	공공건물 ○○○발전사업 유지보수 위탁 용역	568,000	2020.12.15.	〃
4	○○○○ 및 회의·평가등의 업무용 노트북 구매	7,000	2021.03.24.	〃
5	연구원 본원 ○○○○ 소모품 교체	8,868	2021.03.29.	〃
6	영농형 ○○○ 하부 가루 ○○ 재배기술연구	10,000	2021.09.28.	〃
7	○○○영농 시스템 ○○센서 구매	7,480	2021.12.07.	〃
8	○○○○ 실증용 구조물 구입	7,000	2021.12.24.	〃

자료 : 녹색에너지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태양에너지연구실 등 3개 부서는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 [표 4] “계약체결 후 일상감사 실시 사업 등 현황”와 같이 ○○○○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니터링 센서 부품 구입 등 총 4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일상감사를 실시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 4] 계약체결 후 일상감사 실시 사업 등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비(천원)	계약일	일상감사일	비 고
계	4건	951,187			
1	○○○○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니터링 센서 부품 구입	6,490	2019.01.01.	2019.03.15.	
2	○○시 ○○하수처리시설 내 지정수목 이식, 벌목 및 식재 공사	119,037	2020.05.22.	2020.09.18.	
3	○○○발전 정보처리 및 취득시설 제작 설치 용역	803,160	2020.09.22.	2020.08.28.	공고 후 일상감사 의뢰
4	○○○○ Station책임보험 지원특구사업자	22,500	2021.12.01.	2022.01.27.	

자료 : 녹색에너지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녹색에너지연구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① 앞으로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되는 물품, 용역, 공사에 대하여 계약 체결 이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일상감사를 철저히 하시고**(주의)**

② 일상감사 운영메뉴얼 제작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간접공사비 등 정산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상용화사업실, 기업지원실, 태양에너지연구실)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녹색에너지연구원”이라 한다)은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표 1] “2천만원 이상 공사 추진 현황”과 같이 14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시행하고 있다.

[표 1] 2천만원 이상 공사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공사 건수	14	3	7	4
공 사 비	5,573,886	324,417	3,570,609	1,678,860

자료 : 녹색에너지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1. 보험료 등 간접공사비 정산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비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3-다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 비목과 그 물량산출(재료량, 노무량, 소요량)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일정률로 계상하는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등에 대해서는 공사원가 제비율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같은 장 제6절 표준시장 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2관 2-가 등에 따르면 간접공사비[1]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 경비와 그 밖의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고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매년 조달청에서 발표한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2-가 및 2-다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계약 대가의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정산[2]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녹색에너지연구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 대가의 지급 청구를 받을 때 보험료 등 납부여부와 간접공사비 사용내용을 최종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녹색에너지연구원(상용화사업실 등 3개 부서)은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 [표 2] “2천만원 이상 공사 간접공사비 정산 미시행 현황”과 같이 총 4건에 대하여 간접공사비 880천원을 회수하여야 하는데도 20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

1) (정의)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 경비와 그 밖의 부수적인 비용을 말함

2) (항목)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표 2] 2천만원 이상 공사 간접공사비 정산 미시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 사 명	공사기간	준공액	도급회사 (대표)	간접공사비 정산 미시행	
					주요 항목	회수액 (제경비포함)
계	4건		1,639,981			880
1	○○-○○ 지역상생 3차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 구매설치(○○)	2018.07.01. ~2020.10.10.	1,495,000	○○○○ (○○○)	환경보전비 등 2개 항목	353
2	전라남도 ○○○○○○○발전소 접속함 개조 공사	2020.07.16. ~2020.10.24.	77,660	㈜○○ (○○○)	환경보전비	221
3	○○시 ○○마을회관 에너지 성능 개선 리모델링 공사	2020.12.15. ~2021.01.29.	35,421	○○○○ 개발㈜ (○○○)	환경보전비 등 2개 항목	178
4	비닐하우스 ○○○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제작 및 구축 공사	2021.12.13. ~2022.02.24.	31,900	○○전기㈜ (○○○)	안전관리비	128

자료 : 녹색에너지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공사비에 포함된 보험료 등 간접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880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공사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 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1]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계약법」 제6조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 환경 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1~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급 포함)+직접노무비 합계액의 2.93%~1.86%까지 적용함

그리고「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르면 준공검사에서 계약상대자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공사감독관(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 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로 제출된 해당 서류의 진위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녹색에너지연구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기성 및 준공 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안전시설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은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녹색에너지연구원연구원(상용화사업실 등 3개 부서)은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 [표 3] "2천만원 이상 공사 안전관리비 부당집행 현황"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내역으로 집행하였는데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집행하였고 부당하게 집행한 안전관리비 10,639천원을 20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회수하지 않고 있다.

[표 3] 2천만원 이상 공사 안전관리비 부당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 사 명	공사기간	도급회사	안전관리비 지급액	안전관리비 부당집행 현황	
					사용불가 내역	회수액 (제경비포함)
계	3건			27,316		10,639
1	○○-○○ 지역상생 3차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 구매설치(○○○)	2018.07.31. ~2020.02.29.	○○○○ (○○○)	13,481	혈압측정기, 자동심장충격기, 공사표지판 등	7,007
2	○○-○○ 지역상생 3차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 구매설치(○○)	2018.07.01. ~2020.10.10.	○○○○ (○○○)	12,439	신호수 인건비, 라바콘, 공사표지판, 신호봉 등	3,446
3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추가공사(○○군 ○○면)	2021.12.13. ~2022.01.02.	○○○○○㈜ (○○○)	1,396	교통비(유류대), 식대	186

자료 : 녹색에너지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과다 지급한 안전관리비 10,639천원의 예산을 낭비하였고 대가지급의 정확성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연구원의 신뢰도를 훼손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녹색에너지연구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과다 지급한 간접공사비 880,000원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639,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전 라 남 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경영기획실)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채용 공고별 전형 단계를 거쳐 202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1명의 임원, 42명의 직원(정규직 16, 비정규직 26)을 신규 채용하였다.

2. 임원 자격요건 인사규정 미반영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은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Ⅱ. 임원의 인사 - 2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에 따르면 임원의 자격은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1]을 고려하고 [표 1]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임원 자격요건 예시 현황”를 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관 또는 자체 인사규정에 정하도록 되어 있다.

---

1) 자격요건 고려사항
1.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상 능력, 위기관리 능력 등 임원으로서의 일반적인 기본역량
2. 감사의 경우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 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해당 분야의 이해도
3.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임원 자격요건 예시 현황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Ⅱ. 임원의 인사 2 임원의자격요건 예시
○○연구원의 임원으로 채용되려면 다음에서 정한 요건 중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① 학력요건** - 석사학위 이하인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진흥원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연구한 경력이 4년 이상인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진흥원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연구한 경력이 4년 이상인자 **② 자격증 요건** -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실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의사·한의사·치과의사 자격증 소지 후 7년 이상 근무한 자 -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자격증 취득 후 실근무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세무사 또는 법무사자격증 취득 후 실근무경력이 11년 이상인자 - 기술사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 기능장 또는 기사자격증 취득 후 10년 이상 근무한 자 **③ 공무원 경력기준** - 3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 속하는 공무원 이었던 자(또는 공무원인 자)로서 연구원과 관련된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자(또는 공무원인 자)로서 연구원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④ 민간경력기준**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등에서 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자료 : 녹색에너지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임원을 임명할 때 임원의 자격요건은 출자·출연기관 인사·지침 임원 자격요건을 참고하고 재단의 기능과 특성을 반영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을 재단 정관이나 내부규정으로 정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녹색에너지연구원(경영기획실)은 원장 공모를 위한 자격요건을 재단 정관이나 내부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는데도 20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원장 임명 자격요건을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정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또한 2020. 11. 6. 제○대 연구원장 공모를 위해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제0대 연구원장 공모 계획(안)[2]'에 연구원장 자격요건이 정관이나 내부규정에 없는데도 '2018년 원장 공모당시 기준'의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여 [표 2] "제○대 연구원장 자격요건"과 같이 공모계획을 내부결재 받아 임원 공모를 추진하였다.

2) "재단법인 녹색에너지 연구원 제○대 연구원장 공모계획[안]" 행정지원실-○○○○(2020. 11. 6.)호,(기안 ○○○, 검토 ○○○, 검토 ○○○, 결재 ○○○ ○○○)

[표 2] 제0대 연구원장 자격요건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제○대 연구원장 공모 계획’ 내부결재 원장 자격요건
□ 자격요건(※원장후보추천위원회, 2018년 원장 공모 당시 기준 ◦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20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을 보유한 사람 ◦ 대학(연구소)에서 정교수(책임연구원급) 이상 직위에서 5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한 경력을 보유한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한 경력을 보유한 사람 ◦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 및 투자기관에서 이사급으로 3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한 경력을 보유한 사람 ◦ 기타 (재)녹색에너지연구원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력이 있다고 추천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사람

자료 : 녹색에너지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원장 공모 자격요건이 정관이나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고 임의대로 결정되어 연구원장 공모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3. 성범죄 및 병역기피 결격사유 조회 누락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녹색에너지연구원 인사관리 규정」(이하 “인사관리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르면 [표 3] “신규직원 채용 결격사유”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을 기피한 사람 또는 기피 중인 사람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표 3] 신규직원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횡령과 배임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2. 경력, 학력 등 이력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채용된 사람 1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을 기피한 사람 또는 기피 중인 사람

자료 : 녹색에너지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녹색에너지 연구원(경영지원실)은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42명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인사 관리규정」 제12조 결격사유 중 8호, 9호 성범죄 경력조회와 13호 「병역법」에 따른 병역기피자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채 직원을 채용하였다.

그로 인하여 재단에 신규채용 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채용되어 인사업무의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4. 경력직 자격요건 사전공개 미실시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인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Ⅲ. 직원의 인사 - ① 신규채용 나. 경력경쟁에 따르면 공개경쟁시험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채용기준 또는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이를 사전에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녹색에너지연구원은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경우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기관홈페이지에 사전에 공개하여 채용기준 또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적격자들이 응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녹색에너지연구원(경영지원실)은 직원을 경력직으로 채용할 경우 구체적 채용기준을 정하여 기관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여야 하는데도 20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경력직 채용의 구체적 자격기준을 정하지도 않았고 기관홈페이

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20. 11. 26. ‘○○○○분야 경력경쟁시험 채용계획(1급, 1명)’에 채용요건을 ○○·○○ 관련 경력이 19년 이상이면서 ○○○○ 경력 5년 필수 조건으로 제한하면서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없이 2020. 12. 17.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12일간 신규채용 공고를 하였다.

그로 인하여 ○○○○분야 경력경쟁시험 채용(1급, 1명)에 응시인원이 1명이 그쳐 재공고를 하는 등 경력경쟁 자격요건을 갖춘 적격자들의 응시기회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녹색에너지연구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① 임원 자격 요건을 「재단 인사규정」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임원 공모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시고**(시정)**

② 앞으로 신규채용 시 최종합격자에 대해 성범죄 및 병역기피자 결격사유를 조회하여 부적격자가 채용되지 않도록 하고, 경력경쟁시험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사전에 알려 채용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 라 남 도
주 의 요구

제　　목 행사홍보비 예산 집행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연구개발본부, 태양에너지연구실, 풍력해양연구실, 일자리지원센터, 경영기획실)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녹색에너지연구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예산은 세입 및 세출예산 과목에 맞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세출예산과목 과목해소 편에 따르면 회의운영비는 기관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회의 시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제공(회의 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 제공 포함)등을 포함하여 회의 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Ⅱ.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에 따르면 - ② 경비 나. 세부집행 요령 9) 행사·홍보비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각종 일반수용비 및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은 행사·홍보비에서 집행하고,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등은 해당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으

며,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녹색에너지연구원은 기관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회의 경비는 회의 운영비로,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등은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녹색에너지연구원(풍력해양연구실 등 7개 부서)은 회의 경비는 회의 운영비로 편성·집행하고,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의 식비는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편성·집행하여야 하는데도 [별표] “행사홍보비로 부적정 집행 명세”와 같이 ○○○ 프로젝트 ○○○○○ 워크숍 식비 등 23건 약44,744천원을 행사·홍보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업무 신뢰도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관계기관 의견 녹색에너지연구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앞으로 행사·홍보비 등 사업비 지출이 세출예산 과목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직원 복무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경영기획실)

훈 계 대 상 자 ① 녹색에너지연구원 경영기획실 ○○(○급) ○○○

② 녹색에너지연구원 경영기획실 ○○(○급) ○○○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녹색에너지연구원”이라 한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06명의 직원(정규직 63, 비정규직 43)이 복무에 임하고 있다.

2. 공가 사용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건강검진 횟수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녹색에너지연구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르면 직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필요한 기간의 공가

를 허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직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줄 수 있고 휴가를 받으려는 직원은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미리 휴가를 신청하고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연구원 직원의 건강복지 향상 및 증진을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차례 2년마다 1인당 최대 30만원에서 35만원까지 종합검진 지원비를 지원하면서 건강검진 대상자는 1일 공가 처리한다는 '종합검진 지원 계획'을 내부결재[1]를 받아 전 부서에 시행하였다.

따라서 녹색에너지연구원 소속 직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복무규정」에 따른 공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녹색에너지연구원(경영기획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해당하지 않은 종합검진은 휴가를 신청하여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건강검진 대상자는 1일 공가 처리하는 내용으로 직원 건강검진 실시 및 종합건강검진 지원을 시행하여 [표] "공가 부적정 사용 및 연가보상비 부당 수령 현황"과 같이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 연구개발본부 ○○○ 등 4명이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공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공가를 사용함으로써 연구개발본부 ○○○ 등 2명에게 216,600원 연차보상비가 부당하게 지급되었다.

---

1) 1. 2019년도 직원 건강검진 실시 및 종합건강검진 진원(안) 경영지원실-000(2019. 2. 26.) 담당자 ○○○, 검토 ○○○, 검토 ○○○, 결재 연구원장 ○○○
2. 2020년도 직원 건강검진 실시 및 종합건강검진 진원(안) 경영지원실-0000(2020. 3. 18.) 담당자 ○○○, 검토 ○○○, 검토 ○○○, 결재 연구원장 ○○○
3. 2021년도 직원 건강검진 실시 및 종합건강검진 진원(안) 경영지원실-000(2021. 1. 18.) 담당자 ○○○, 검토 ○○○, 검토 ○○○, 결재 연구원장 ○○○

[표] 공가 부적정 사용 및 연가보상비 부당 수령 현황

연번	부서명	성명	공가일	연가보상비 수령액(원)
계		4명		216,600
1	연구개발본부(○급)	○○○	2019-10-21	88,570
2	에너지신산업연구실(○급)	○○○	2019-10-31	128,030
3	경영기획실(○급)	○○○	2019-11-25	-
4	기업지원실(퇴사자)	○○○	2021-11-23	-

자료 : 녹색에너지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3. 대체 휴무 사용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복무규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부서장은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직원이 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녹색에너지연구원(경영기획실 등 9개 부서)는 휴일 8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때만 대체휴무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별표] “대체휴무 부적정 사용 현황”과 같이 휴일이 아닌 평일근무자 및 8시간 미만 휴일근무자 연구개발본부 ○○○ 등 61명이 대체휴무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그로 인하여 직원이 1일 근무시간 8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직원 복무규정 위반하여 복무 기강을 부실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관계기관 의견 녹색에너지연구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해당하지 않은 종합건강검진을 공가처리 하도록 '종합검진 지원 계획'을 내부결재를 받아 전 부서에 시행하여 복무규정 위반을 초래한 업무 前 담당자 ○○○, ○○○를 훈계하고(**훈계**)

② 앞으로 「국가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가로 처리하도록 하고, 대체휴무는 휴일근무 8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만이 실시하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태양에너지연구실, 일자리지원센터, 상용화사업실, 경영기획실)

훈 계 대 상 자 녹색에너지연구원 태양에너지연구실 ○○(○급) ○○○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녹색에너지연구원”이라 한다)은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16건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고, 28건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급) ○○○는 2019. 3. 15.부터 20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태양에너지연구실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녹색에너지연구원은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 [표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현황”과 같이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 ○○○ 리모델링 및 ○○ 영상관 영상 제작 장비·교체” 등 16건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였다.

[표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현황(2019.1월~2021.12월)

(단위 : 백만원)

담 당 부 서	계		2019년		2020년		2021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계	16	5,486	3	340	5	1,045	8	4,101
태양에너지연구실	6	540	2	260	1	141	3	139
풍력·해양연구실	2	3,782					2	3,782
에너지신산업연구실	1	83					1	83
기업지원실	2	120			2	120		
일자리지원센터	3	313			1	216	2	97
상용화사업실	2	648	1	80	1	568		

자료 : 녹색에너지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가.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 선정 부적정

(1) 관계법령(판단기준)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재무회계규정」 제53조에 따르면 입찰 방법 및 그 밖의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 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사, 용역, 물품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녹색에너지연구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만 가능하고 공사, 용역, 물품 중 2개 이상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는 경우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녹색에너지연구원(태양에너지연구실 등 3개 부서)은 2022. 7. 15. 감사일 현재 [표 2]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사업 공정별 현황”과 같이 계약목적물에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닌 공사 비율이 최소 5.9%에서 최대 89.6%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분할 발주 여부를 검토하지도 않고 사업 전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표 2]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사업 공정별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용 역 명	공 정 별				비고
		계	공 사	물 품	용 역	
1	100kW급 ○○○ ○○ 태양광 모듈 전용 크리닝 및 ○○ ○○○ O&M 시스템 개발	220,000 (100%)	11,780 (5.9%)	72,880 (34.3%)	135,340 (59.8%)	태양에너지연구실
2	○○○ 태양광 ○○○ 구조물 제작 및 구축 용역	39,930 (100%)	35,791 (89.6%)	- (0.0%)	4,139 (10.4%)	
3	○○○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사업 ○○○○○ 설계, 제작 및 시공 용역	141,100 (100%)	79,940 (56.7%)	46,884 (33.2%)	14,276 (10.1%)	
4	○○○ ○○ 태양광 발전 구조물 개발 및 구축 용역	61,500 (100%)	52,010 (84.6%)	5,350 (8.7%)	4,140 (6.7%)	
5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 리모델링 및 ○○ 영상관 영상 제작 장비·교체	80,000 (100%)	12,330 (15.4%)	24,500 (30.6%)	43,170 (54.0%)	상용화사업실
6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 ○○○○○ ○○○○○○○ 등 인테리어 디자인 및 조성용역	27,550 (100%)	13,500 (49.0%)	13,450 (48.8%)	600 (2.2%)	일자리지원센터

자료 : 녹색에너지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나.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미검토 등 업무처리 부적정

(1)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일상감사 대상[1]에 해당

1) 「자체감사규칙」 별표 : 1,000만원 이상 용역의 구매 추진계획, 계약방법 및 업체 선정(심사) 관련된 사항 일체 등

하는 경우 대상사업 검토서를 작성하여 계약부서를 경유하여 일상감사부서에 협상에 의한 계약의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녹색에너지연구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사업부서에서 일상감사부서에 협상에 의한 계약의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녹색에너지연구원(태양에너지연구실 등 6개 부서)은 20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 16건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서에서 일상감사부서에 협상에 의한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일상감사를 요청하지 않은 채 계약을 추진하였다.

그로 인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닌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부적정하게 추진하는 등 계약법령의 취지를 훼손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선금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녹색에너지연구원은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 [별표] “선금 지급 및 채권 확보 세부 현황”과 같이 28건에 대하여 선금 51억 1백만원을 지급하였다.

「녹색에너지연구원 재무회계규정」 제53조에 따르면 입찰 방법 및 그 밖의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채권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보증·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2]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2)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함.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담당자는 선금전액 사용 시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선금 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권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고, 그 증권 또는 보증서의 보증·보험금액은 선금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선금 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녹색에너지연구원(경영기획실)은 선금 지급 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별표] “선금 지급 및 채권 확보 세부 현황”과 같이 ‘○○○○ ○○○○ 연계용 AC22.9kV 선로 구축공사 ○○용역’은 증권 또는 보증서 없이도 신청서만 제출받고 2021. 12. 28. 선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선금보증보험은 선금액에 상당한 이자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 전용 ○○창고 신축전기공사(전기)’ 등 5건은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지 않고 선금액 만큼만 보증금액으로 산정하였다.

그리고 선금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 지급일 이전,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 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시 ○○ 하수 처리시설 내 지정 수목 이식 벌목 및 식재공사’ 등 2건은 선금 지급일 이후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을 선정하였고, ‘100kw급 ○○○ ○○ 태양광 모듈 전용 크리닝 및 ○○ ○○○ O&M 시스템 개발’ 등 2건은 종료일을 이행기간의 종료일 이전으로 선정하여 선금 채권확보 조치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녹색에너지연구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

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①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을 일상감사부서에 의뢰하여 타당성을 검토받지 않고 계약을 추진한 업무 담당자 ○○○를 훈계하고**(훈계)**

②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선금 지급 업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업무를 철저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